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5. 11

# 차례

## I. 국가 개황 .....

1. 일반 개황 .....
2. 정치 개황 .....
3. 경제 개황 .....
4. 필리핀 역사 .....
- 가. 연도별 역사 .....
- 나. 주요 역사단계별 요약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 II. 경제 및 정치 동향 .....

1. 경제상황 변천사 .....
2. 경제 동향 .....
- 가. 국내경제 .....
- 나. 대외거래 .....
-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3. 정치·사회 동향 .....
- 가. 정치 안정성 .....
- 나. 사회 안정성 .....
- 다. 대외관계 .....
-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
4. 종합 전망

## III. 주요 산업 .....

1. 산업구조 .....
2. 농림어업 .....
3. 광업 .....
4. 제조업 .....
5. 건설업 .....
6. 금융서비스업 .....

- 7. 소매유통업 .....
- 8. 관광업 .....

#### IV. 외국인투자 환경 .....

-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 가. 외국인투자정책 .....
  - 나. 투자관련법규 .....
  - 다. 투자절차 .....
  - 라. 투자유관기관 .....

- 2. 투자우대정책 .....

  - 가. 일반적 인센티브(세제) .....
  - 나. 투자위원회의 주요 인센티브 .....
  - 다.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
  - 라. 투자규제조치 .....

- 3. 외국인투자 여건 .....

  - 가. 무역제도 .....
  - 나. 외환제도 .....
  - 다. 금융제도 .....
  - 라. 조세제도 .....
  - 마. 노동여건 .....

####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

- 1. 교역 및 투자 현황 .....

  - 가. 교역현황 .....
  -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 2. 진출확대 방안 .....

  - 가. 수출 및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 나.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
  - 다.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

<부록> 필리핀 외국인투자법

## < 요약 >

### □ 필리핀 경제 GDP 846억 달러('04년), 1인당 국민소득 981달러

- 1998년 아시아경제위기 영향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함. 1999년 3.4%로 회복되어 2000년 4.0%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Estrada 대통령의 실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위축되었음.

- 2001년 Arroyo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정국안정으로 외국인직접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의 작황 호조, 수출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됨.

○ 2004년 경제성장률 6.1%, 금년 5.0% 성장 전망

-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긴축 재정정책 운용,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적자폭 축소 기대

○ 2004년 재정수지/GDP -3.9%, 금년 -3.2% 전망

-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상환부담 과중 : 2004년 총외채잔액/GDP 77.9%, 총외채잔액/수출 120%

### □ 정치·사회 안정성 : Arroyo 대통령 탄핵위기 극복, 회교과격단체에 의한 테러위험 상존

- 지난 6월 Arroyo 대통령이 2004년 대선부정의혹으로 탄핵위기에 처하였으나, 의회 내의 확고한 친정부세력의 지원으로 탄핵위기 탈피

- 민다나오섬 회교분리주의세력 등과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음.

□ 산업구조 : 취약한 산업구조 - 농림어업 13.7%, 제조업 23.5%, 서비스 53.9%

- 제조업에서 식품가공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이 경제비중은 농림어업보다 높으나 고용인원은 농림어업에 미치지 못함.
-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에 비해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국내 투자자금 조성이 원활치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무역구조 : 전자제품 위주의 수출, 일본 및 미국에 집중된 무역거래

- 상품수출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68.8%를 기록하여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함.
  - 주요 수출품 : 반도체 등 전자제품 68.8%, 의류 5.6%, 코코넛유 1.5%.
- 주요 교역대상국이 일본과 미국이며 2개 국가에 대한 수출규모가 전체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함.
  - 주요 수출국 : 일본 20.1%, 미국 17.1%, 네덜란드 9.1%

□ 투자진출 전략 : 목표시장을 선정한 후 투자진출 추진

- 내수시장 구매력이 취약함. 따라서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하는 경우,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한 후 투자진출전략 추진
- 투자유망 분야 : ASEAN 시장진출에 유리한 산업,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I. 국가 개황

## 1. 일반 개황

- 국 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면 적 : 300,179km<sup>2</sup>(한반도의 1.3배)
- 인 구 : 8천 620만 명(2004년)
- 주요도시 : 수도 마닐라(9,933), 다바오(1,147), 체부(719)  
(인구: 천 명)
- 민족구성 : 말레이족 (주류),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네그리토족(원주민)
- 종교 : 카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 기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연중 최고온기 : 5월 24-34℃  
연중 최저온기 : 1월 21-30℃  
연중 최 건 기 : 2월 13mm  
연중 최 우 기 : 7월 432mm
- 공용어 : 타갈로그어, 영어
- 독립 : 1946. 7. 4. (미국)
- 행정구역 : 79개 주, 114개 시  
※ 3개 특별지역: Metro Manila, 코딜레라 행정자치구역(CAR), 민다나오 회교자치구역(ARMM)

**군 사 력** : 98천 명(육군 61천 명, 해군 22천 명, 공군 15천 명)

**국제기구** : IMF, IBRD, ADB, ASEAN, WTO, APEC 등

**공 휴 일**

- **국정공휴일**

- 신정(1. 1)
- 민중혁명(EDSA I) 기념일(2. 25)
- 바탄기념일(4. 9)
- 노동절(5. 1)
- 독립선언기념일(6. 12)
- 니노이 아키노의 날(8. 21)
- 영웅의 날(8. 28)
- 보니파시오 기념일(11. 30)
- 리잘 기념일(12. 30)
- 연말 특별공휴일(12. 31)

- **종교 공휴일**

- 성목요일/성금요일/성토요일(사순절 공휴일)
- 모든 성인의 날(11. 1)
- 성탄절(12. 25)

**시 차** :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2. 정치 개황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대통령(국가원수)>

- 피선거격: 필리핀 태생 국민으로서 최소 40세 이상이고 선거직전 기준 국내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
- 임기 : 6년 단임제
- 대통령은 의회 동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회는 2/3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결할 수 있음. 또한 대통령의 내각 임명은 의회임명인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함.
- 유고시 권한승계 및 대행: 부통령이 잔여임기 승계,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시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시까지만 대행
- 현대통령 : Gloria Macapagal Arroyo (Lakas Coalition당, 2004년 5월 10일 당선, 6월 30일 취임)

### <부통령>

- 피선거격 : 대통령 피선거격과 동일
- 임기 : 6년 (1차 중임 가능)
- 부통령 유고시 :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중에서 후임 부통령 지명, 단 상·하원의 과반수 인준 필요
- 현부통령 : Noli de Castro (Arroyo 대통령과 동시 당선)

### <주요 내각>

- 재무장관 : Margarito Teves
- 경제기획장관 : Augusto Santos
- 에너지장관 : Raphael Lotilla
- 통상산업장관 : Peter Favila



의 회 : 양원제

상원 : 24석, 임기 6년

하원 : 212석, 임기 3년

주요정당 : Lakas Coalition(국민의 힘당 연립, 하원의석 79석), NPC  
(국민연합당, 하원의석 42석), Kampi(자유필리핀동맹당, 하  
원의석 35석), Liberty Party(자유당, 하원의석 34석)

### 3. 경제 개황

GDP(2004년) : 846억 달러

1인당 GDP(2004년) : 981 달러

화폐단위 : Peso(P)

회계연도 : 1. 1~12. 31

산업구조(2004년) : 서비스업 53.9%, 제조업 23.5%, 농림어업 13.7%

주요 수출품(2004년) : 반도체 등 전자제품 68.8%, 의류 5.6%, 코코  
넛유 1.5%, 석유화학제품 1.0%

주요 수입품(2004년) : 반가공원재료 30.8%, 통신장비 및 전기기계  
19.6%, 원유 5.7%

주요 수출국(2004년) : 일본 20.1%, 미국 17.1%, 네덜란드 9.1%, 홍콩  
7.9%, 중국 6.7%, 싱가포르 6.6%

주요 수입국(2004년) : 일본 19.8%, 미국 13.7%, 중국 7.7%, 싱가포르  
7.4%, 대만 7.0%, 한국 5.6%

경제성장률(2004년) : 6.1%

□ 소비자물가상승률(2004년) : 6.0%

□ 경상수지(2004년) : 24억 달러

□ 외환보유액(2004년) : 131억 달러

□ 총 외채(2004년) : 658억 달러

#### 4. 필리핀 역사

##### 가. 연도별 역사

- 1521. 3 : 마젤란의 필리핀 상륙
- 1571~1898 : 스페인 식민지
- 1896. 8 : 필리핀 혁명 시작 (스페인 저항운동은 1860년부터 시작)
- 1898. 6 : 필리핀 혁명지도자 Emilio Aguinal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 1898. 12 : 미국·스페인의 파리조약에 의거 필리핀은 미국에 양도됨.
- 1899~1902 : 필리핀의 대미국 항쟁
- 1935. 11 : 필리핀 자치정부 출범(정부수반: Manuel L. Quezon)
- 1941. 12 : 일본의 필리핀 침입
- 1943. 10 : 일본군정하의 괴뢰정부 수립(정부수반: Jose P. Laurel)
- 1945. 2 : 미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해방
- 1946. 7 : 미국으로부터 독립(초대 대통령: Manuel A. Roxas)
- 1950. 1 : Elpidio R. Quirino 정권 출범, 미국원조로 전후복구 노력
- 1954. 1 : Ramon F. Magsaysay 정권 출범, 정치의 근대화와 민족주의 고취
- 1958. 1 : Carlos P. Garcia 정권 출범
- 1962. 1 : Diosdado P. Macapagal 정권 출범
- 1966. 1 : Ferdinand E. Marcos 정권 출범
- 1972. 9 : Marcos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 1981. 1 : 계엄령 해제
- 1981. 6 : Marcos 대통령의 재당선
- 1983. 8 :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 암살
- 1986. 2 : Marcos 독재정권 붕괴 및 Corazon Aquino 대통령 취임
- 1987. 2 : 국민투표로 필리핀 신헌법 제정 공포
- 1992. 6 : Aquino 대통령 재임시의 국방장관 Fidel V. Ramos 대통령 취임
- 1998. 6 : Joseph E. Estrada 정권 출범
- 2001. 1 : 국정운영능력 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Estrada 대통령의 축출 및 부통령 Gloria Macapagal Arroyo의 대통령 취임
- 2004. 6 : Gloria Macapagal Arroyo 정권 출범

## 나. 주요 역사단계별 요약

### <1571년 스페인 정복 이전>

□ 기원 전후 말레이계가 유입 · 정착, 원주민 네그리토(Negrito)는 산악지대로 이주

- 산악, 섬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정착과정에서 소규모의 부락공동체 (Barangay)가 자연스럽게 형성, 통일국가 미성립

□ 15~16세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슬람교도들의 이주

- 이슬람교도들은 Sulu열도로부터 민다나오섬 일대에 걸쳐 정착하였으며, 1565년경에는 마닐라 지역에까지 진출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 <1571~1898년: 스페인 식민지배>

□ 1521년 마젤란의 필리핀 사마르(Samar)섬 상륙

- 1521년 이후 스페인은 수차레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 총독을 마닐라에 두고 약 330년간 식민지배

※ 필리핀이란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 Philip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 □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전개

- 1860년 스페인 내란이 발발하자 필리핀의 대스페인 저항운동 시작
- 1892년 노동자출신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봉기
- 1896년 필리핀 혁명
-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Emilio Aquinal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 <1898~1945년: 미국 식민지배>

#### □ 1898년 12월 미국·스페인 파리조약 체결

- 스페인은 2천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에 대한 통치권을 미국에 이양

#### □ 1901년 3월 23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Aquinaldo의 체포

-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1902년까지 지속

#### □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점진적 자치 허용

- 1916년 양원제 도입
-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을 통한 10년 후 완전독립 약속
-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을 수반으로 자치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그는 1942년 일본의 침략시까지 재임

### <1941~1946년: 일본 점령기 및 독립>

□ 1941년 12월 일본의 침략, 1945년 2월까지 점령

- 1943년 10월 14일 Jose P. Laurel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 수립

□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은 Sergio S. Osmena에게 자치정부 이양
-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1946년 공화국 건국 이후 Arroyo 현대통령 집권까지>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에 의한 장기 독재집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필리핀의 정권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뤄졌음.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

- 1972년 9월 Marcos 대통령은 정부 전복세력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 선포
- 1983년 8월 21일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이 미국망명으로부터 귀국,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함.

□ 1986년 제 1 민중혁명(People Power Revolution: EDSA I)에 의한 정권 교체

- 1986년 2월 7일 Marcos의 조기선거 실시, 2월 16일 재당선 발표, 부정선거 규탄 민중시위의 계속
- 1986년 2월 25일 야당측 정·부통령 후보 Corazon Aquino(Benigno Aquino의 처)와 Laurel에 의한 Marcos의 당선 무효 선언, 자신들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서식 거행
- 따라서 Marcos 일가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

□ Aquino 대통령 이후, Ramos 대통령, Estrada 대통령은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국민직선으로 당선 집권

□ 2001년 제 2 민중혁명(EDSA II)에 의한 정권 교체

- Estrada 대통령이 정국운영능력 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의회탄핵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 2 민중혁명에 의해 축출됨.

- 2001년 1월 20일 Arroyo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2004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에서 Arroyo 대통령의 승리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49. 3. 3(북한과는 2000. 7. 12)

- 필리핀은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국

- 1954년 1월 19일 주필리핀 한국 공사관 설치, 1954년 11월 11일 주한 필리핀 공사관 설치, 1958년 2월 1일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 인사 교류

### < 한국측 인사 방비 >

박정희 대통령(1966. 10), 전두환 대통령(1981. 7), 김영삼 대통령(1994. 11), 김영삼 대통령(1996. 11, APEC 정상회담 참석), 김대중 대통령(1999. 11,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국민 방문)

### < 필리핀측 인사 방한 >

Ramos 대통령(1993. 5), Estrada 대통령(1999. 6. 국민 방문), Arroyo 대통령(2003. 6, 국민 방문)

□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 참전기간 : 1950. 9. 19 ~ 1953. 5. 13
- 총병력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 전사상자수 : 전사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 주요협정 : 항공운수협정(1969. 8), 문화협정(1973. 4), 무역협정(1978. 11), 경제기술협력협정(1985. 6), 과학기술협력협정(1986. 8), 이중과세방지협정(1986. 11), 투자보장협정(1996. 9), 범죄인인도조약(1996. 11), 형사사법공조조약(2003. 6)

□ 양국간의 주요 단체

- 필·한친선협회(The Filipino-Korean Association) : 1972년 7월 설립
- 한·필의원친선협회 : 1985년 6월 설립
- 한·필민간경제협의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교역 현황

<표 I - 1>

최근 대필리핀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10	주요 품목
수 출	2,950	2,975	3,379	2,669	전자부품, 비철금속, 직물
수 입	1,867	1,964	2,119	1,902	반도체, 농산물

자료: KOTIS

- 대필리핀 수출은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필리핀의 수출증가에도 다소 기여.
- 최근 들어 대필리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진출이 저조한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 □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I - 2〉 최근 대필리핀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9
금 액	33,324	-9,173	15,913	12,089	29,394
건 수	21	37	18	27	29

주: 순투자 기준, 2005년 9월 말 현재 총투자규모: 631건, 537,913천 달러  
자료: KOTIS

- 투자규모가 199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9~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02년 급감한 이후 신규 투자진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대필리핀 투자의 주업종은 전자, 통신장비,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이며 CAVITE, BATAN 등 경제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주로 입주

## II. 경제 및 정치 동향

### 1. 경제상황 변천사

- 1946년 7월 독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경제개발지침에 따라 민간 주도형 경제재건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대체상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전략을 채택함.
-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경제개발정책은 식품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중심 국내제조업의 기반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제조업발전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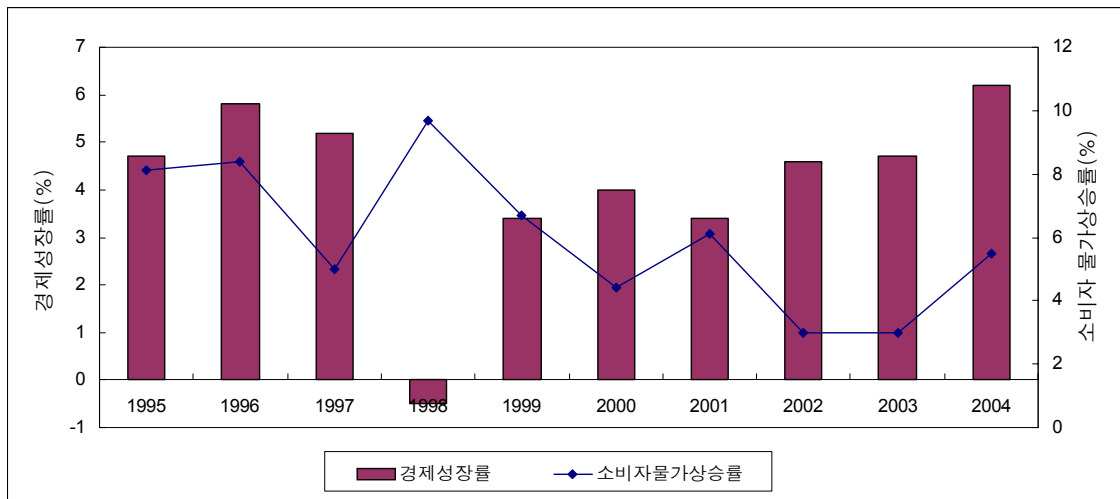


- 따라서 196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Marcos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장려법을 제정 발표하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를 설립하였음. 또한 1970년에는 산업구조의 재조정, 신수출시장개척, 신수출상품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장려법도 제정 발표하였음.
- Marcos의 경제정책이 주효하여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업뿐만 아니라 섬유, 화학, 금속 등을 중심으로 조립제조업의 발전이 있었음. 이로 인해 1970년대에는 전체 수출에서 비전통 수출상품인 제조업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적인 1차 산업의 상품의 수출은 축소되었음.
- 1972년 9월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개발정책이 민간주도형에서 국가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지향형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음. 1980년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무역, 투자, 금융제도의 개혁 등 경제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음.

<그림 II-1>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 EIU Countr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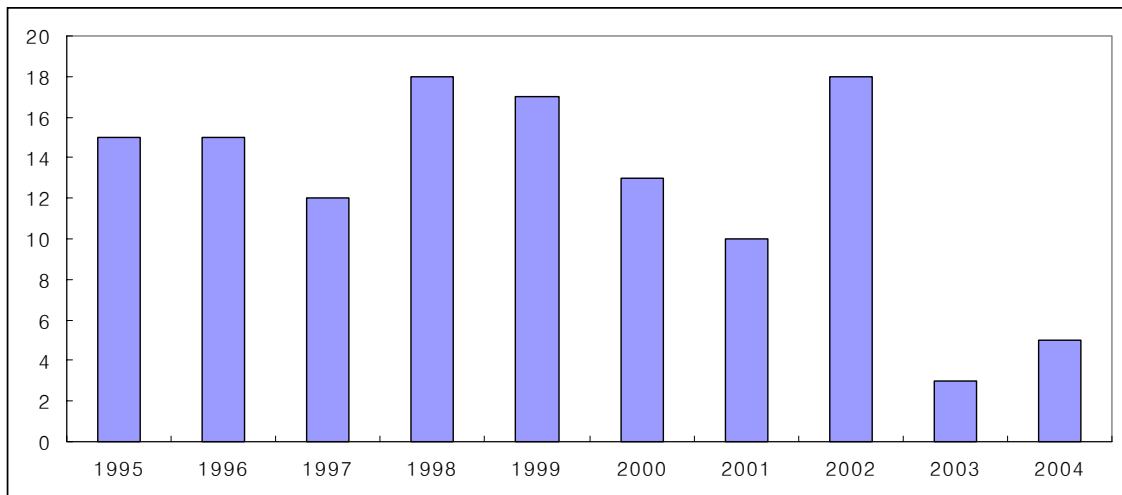
- 그러나 1983년 8월 Aquino 상원의원의 암살로 인해 정국이 극히 불안해지자 외자의 대량 해외유출로 대외지급능력의 심각한 취약화가 초래되어 동년 10월 대외채무지불불능을 선언하게 됨. 1984년과 1985년에는 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음.

- 1986년 Corazon Aquino 정권이 출범하면서 빈곤퇴치, 고용창출, 평등 및 사회정의 구현, 지속적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6개년계획을 추진함. 특히 경제운영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조달하였음.
- Aquino 정권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급속히 회복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1987년 5.1%, 1988년 6.3%, 1989년 5.6%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음.
- 그러나 잦은 쿠데타 발생에 따른 정정불안, 가뭄 태풍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 과중한 대외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1991년 초 IMF의 6억 3,380만 SDR 차관 지원과 함께 엄격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199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하였음.

<그림 II-2>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EIU Country Report

- 1992년 집권한 Ramos 대통령은 2000년까지 필리핀 경제의 신흥공업국(NIEs) 대열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2000'이라는 경제개발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음.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Aquino 정권 시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국영기업 민영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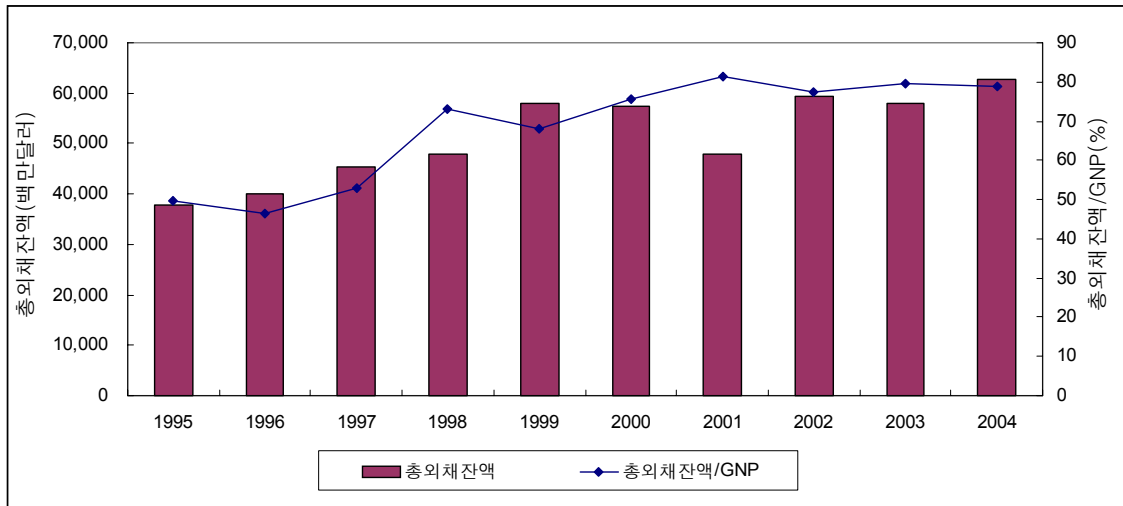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음.

- Ramos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실질 GDP 성장률이 1992년 0.3%에서 출발하여 1996년 5.5%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었음. 그렇지만, 과중한 대외채무부담,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기조 등과 같은 경제난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음.

<그림 II-3>

### 총외채잔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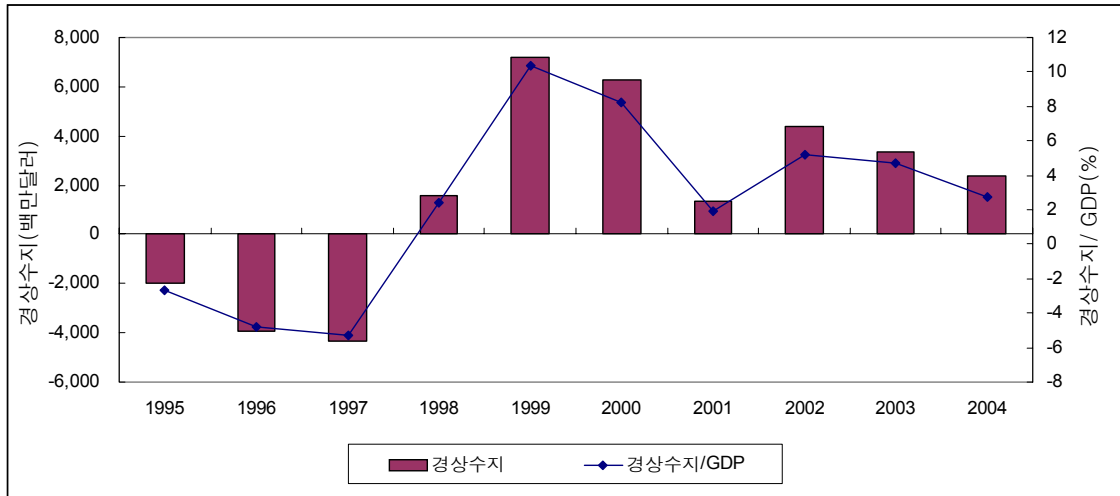
자료 : EIU Country Report

- 1998년에 출범한 Estrada 정권은 빈민층 지원정책을 집중 유세하여 권좌에 올랐으며 집권초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Ramos 정권하의 기조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1998년은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 농업부문의 흉작, 소비수요 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6%로 나타났음.
- 한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대외거래도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흑자로 반전되었음.

<그림 II- 4>

경상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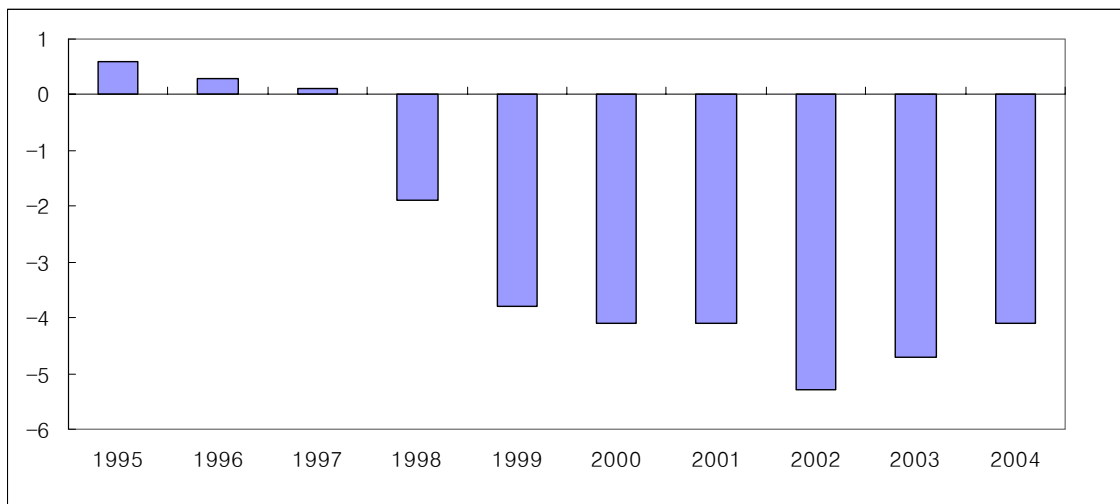
자료 : EIU Country Report

- Estrada 대통령은 2001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능력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Ramos 정권이 이룩해 놓은 재정수지의 소폭 흑자기조를 대폭 적자로 반전시키는 등 경제기반을 약화시켰음.

<그림 II- 5>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자료 : EIU Country Report

## 2. 경제 동향

### 가. 국내경제

#### □ 경제성장세의 지속

- 최근 필리핀 경제는 농업부문의 작황 호조, 관광산업 등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2004년 6.1%의 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05/06년 기간 중에는 중국 및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이 5.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Ⅱ-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sup>f</sup>
경제성장률	3.4	4.3	3.6	6.1	5.0
재정수지/GDP	-4.1	-5.4	-4.7	-3.9	-3.2
소비자물가상승률	6.1	3.1	2.9	6.0	8.2

자 료 : EIU viewswire

#### □ 재정수지의 만성적 적자 기조

- 부실한 조세제도 및 세수기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긴축 재정정책 운용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 2003년부터 대GDP 적자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영전력회사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폭의 지속적 축소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단기에 대폭 개선은 어려워 보임.

#### □ 소비자 물가수준의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수송·교통비 및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Cost Push와 경제규모 확대와 관련된 Demand Pull이 작용하여 2003년 2.9%로에서 2004년에는 6.0%로 상승하였음.
- 2005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재정수지 개선이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

- 만성적 재정적자의 해소가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그리고 2005년 1월 징세 효율법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음. 또한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도 2005년 6월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되자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위헌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효력중지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발효 후 불과 수 시간 이내에 잠정 효력중지 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취하였음. 그러나 10월 18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효력중지를 해제함.

#### 나. 대외거래

#### □ 상품수지 적자의 소폭 축소 예상

-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2004년 수출증가율이 약 10.%에 달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부담도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2005/06년에는 중국 및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로 상품수출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민간부문의 소비재, 수출 관련 중간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증가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

- 상품수지는 대체로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양호한 서비스 및 소득수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2005/06년에는 상품수지 적자의 소폭 축소, 관광수입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표Ⅱ-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sup>f</sup>
경 상 수 지	1,323	4,383	1,396	2,439	4,000
경상수지/GDP	1.9	5.7	1.8	2.9	4.2
상 품 수 지	-743	407	-5,455	-6,381	-5,500
수 출	31,243	34,377	35,342	38,728	41,000
수 입	31,986	33,970	40,797	45,109	46,500
외 환 보 유 고	13,429	13,136	13,457	13,116	

자 료 : EIU viewswire

□ 수출구조의 다변화 부족

- 상품수출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68.8%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부족하며, 또한 총수출의 약 20.1% (2004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본에 집중되어 수출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저조

-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가들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으로 1994년 외국인투자규모가 미화 약 25억 달러에 달한 적이 있음. 그러나 최근 필리핀의 정국불안, 재정위기발생 우려, 중국과의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표 II-3〉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sup>f</sup>
금 액	1,000	1,800	347	469	600
대 GDP 비중	1.4	2.3	0.4	0.6	0.6

자 료 : EIU viewswire

〈표 II- 4〉 최근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 추이

단위 : 백만 페소

	2003년	2004. 1/4분기	2004. 2/4분기	2004. 3/4분기
미 국	10,432.1	1,376.7	251.0	3,670.2
일 본	8,840.8	11,979.3	4,175.8	1,586.2
네덜란드	3,865.9	288.1	633.1	540.7
대 만	2,553.5	106.1	156.5	76.5
영 국	2,380.7	1,505.2	165.3	12.4
호 주	985.6	-	154.1	16.1
한 국	712.2	712.8	1,832.4	183.8
독 일	452.1	2.4	77.1	376.4
중 국	310.8	74.7	3.1	32.9
싱가포르	294.9	220.6	304.0	84.0
홍 콩	255.8	23.4	-	-
기 타	2,925.9	99,130.5 <sup>주</sup>	246.5	654.2
계	34,010.3	115,419.8	7,998.9	7,233.4

주 : Nauru 앞 96,528.5백만 페소 투자승인 제외시 2,602.0백만 페소

자료 :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 2000/02년의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 미화 약 13억 달러였으나



2003/04년에는 연평균 4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음. 필리핀 법제도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장수준이나 이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는 외국인투자자의 필리핀에 대한 신뢰상실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함.

### <참고> 필리핀 투자 일본기업 대상 투자환경 설문조사 결과

- 2003년 JETRO가 필리핀 투자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환경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된 애로사항은 빈약한 사회간접자본,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환경, 원자재 조달의 애로, 임금상승 등으로 나타남.
- 일본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비율 (응답업체중 해당 항목을 지적한 업체의 비율):
  - 불충분한 사회간접자본 : 77%
  -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환경 : 72%
  - 지방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운영 : 50%
  - 낮은 노동력 수준과 불충분한 교육 : 61.7%
  - 임금상승 : 59.7%
    - ※기타 노동문제로는 해고 및 인원감축 제한, 파업 등 강한 노조 활동
  - 불안정한 현지화 환율 : 58.2%
  - 필리핀내 원자재 획득의 애로 : 60.5%
    - ※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필리핀에서 조달하는 일본기업은 전체의 17.4%로 아시아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품질관리 애로 : 43.5%
- 상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없었으며 일부는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일본기업의 필리핀 투자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기업의 필리핀 직접투자진출은 주로 전자, 플라스틱, 자동차, 금속산업 등의 분야이며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수는 150개 업체임)

##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 능력

### □ 주요 신용도평가기관의 신용도 추이

- OECD: 5등급(04. 4) → 5등급(05. 4)
- ICRG: 71/140(03. 10) → 75/140(04. 4)
- Euromoney: 65/185(03. 9) → 70/185(04. 3)
- I.I: 65/172(03. 9) → 65/172(04. 3)
- S&P: BB-(Stable, 05/1) → BB-(Negative, 05/7)
- Moody's: B1(Stable, 05/2)
- FITCH: BB(Stable, 05/5/26) → BB(Negative, 05/7/11)

### □ S&P, Moody's 등의 국가신용도 하향조정

- 국제신용도평가기관들이 필리핀 정부가 재정부족의 일부를 해외차입으로 해결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필리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005년 1월 BB에서 BB-로 낮추었으며, 2005년 7월에는 Arroyo 대통령의 대선부정 관련 탄핵 위기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도 2005년 2월 Ba2에서 B1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으나 추가 등급조정은 없었음. 그리고 Fitch는 국가신용등급을 BB로 계속 유지하되 전망은 2005년 5월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하였다가 7월에다시 Negative로 재조정하였음.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모든 거래 지원
- 영국 ECGD : 모든 거래 지원

□ **과중한 외채상환부담**

- 경제규모 및 총수출에 대한 총외채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각각 77.9%, 120%를 기록할 정도로 외채상환부담이 과중한 편임. 또한 2004년 기준의 외환보유수준도 외채상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 D.S.R. 및 단기외채비중은 개선되어 가고 있어 단기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표 II-5〉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sup>f</sup>
총 외 채 잔 액	58,500	60,000	62,700	65,800	66,700
총외채잔액/GDP	82.2	78.3	80.7	77.9	69.2
총외채잔액/수출	123	114	126	120	112
D. S. R.	19.6	19.7	20.6	15.7	16.2

자 료 : EIU viewswire

**3.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 안정성**

□ **Arroyo 대통령의 탄핵정국 극복**

- Arroyo 대통령은 대선부정 의혹 및 가족들의 뇌물수수 조사 등으로 인해 야권정치세력, 종교계 및 교육계 등으로부터 대통령 퇴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지난 6월말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의회 내의 확고한 친정부 세력의 지원으로 부결되었음.
- 필리핀 하원 의석 212석 가운데 주요 정당별 의석수는 Arroyo 대통령의 국민의 힘당 연립(Lakas Coalition)이 79석, 국민연합당(NPC) 42석, 자유

필리핀동맹당(Kampi) 35석, 자유당(Liberty Party) 34석임. 국민연합당, 자유필리핀동맹당, 자유당 등이 모두 친정부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지난 6월 Arroyo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관련하여 자유당이 친정부연립에서 이탈하였음.

- 그리고 상원(의석수 24석)도 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Arroyo 대통령의 의회지지기반은 확고하다 할 수 있음.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한 현재의 대통령중심 중앙집권제를 내각책임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 군부의 부정부패 조사 관련 동요 가능성

- 한편 군부의 부정부패 조사와 관련하여 군부 내 일각에서 동요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음. 2003년 7월 간부급 장교들이 주도한 쿠데타 시도 등을 감안할 때 군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가 정국불안으로 연결될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나. 사회 안정성

#### □ 회교분리주의세력 등과의 무력충돌 계속

- 모로 국가 해방전선(MNLF) 및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 등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주의세력들과 정부군간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강도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루손 섬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게릴라단체인 신인민군(NPA)의 활동도 지속되고 있음.

#### □ 민다나오 섬 회교분리주의세력과의 협상 추진

- 민다나오 섬 회교분리주의세력들과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민다나오 섬의 일부지역 즉, Sulu 주를 포함한 5개 주와 Marawi 시 등 6개 지역에서는 1996년 9월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거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음. (루손 섬 북부 코딜레라지역에 대해서도 역사 및 문화의 특유성을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하였음)

- 한편 미국에서는 회교반군진압과 관련하여 군비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그리고 회교반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마닐라 등과 같은 경제중심지가 아닌 남부 섬지방임.

## □ Abu Sayyaf의 과격회교단체에 의한 테러행위

- 2003년부터 남쪽 바실란 섬을 주근거지로 하여 Abu Sayyaf가 이끌고 있는 소규모 과격회교단체의 활동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 이들은 독립회교국 건립 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광객 또는 주민을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로 저지르고 있음.
- 특히 2005년 2월 14일 이 과격단체는 필리핀 정부의 남부 회교반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마닐라 기차역 인근 고속도로, 남부 제너럴 산토스 시의 쇼핑몰, 남부 다바오의 버스터미널 등 3개 지역에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참고> 필리핀, 정국불안 지속의 배경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현대통령이 본인의 대선부정 의혹 및 가족들의 뇌물수수 조사 등으로 인해 야권정치세력, 종교계 및 교육계 등으로부터 대통령 퇴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음.
- 2005년 6월말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의회 내의 확고한 친정부세력의 지원으로 탄핵정국에서 탈피할 수 있었음. 한편 아키노 전대통령과 같은 유력한 여권정치인들도 대통령의 도덕성 손상을 지적하면서 사임 종용을 계속하고 있어 필리핀 정국은 안정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

### 필리핀 사회불안의 역사적 배경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주의세력인 모로 국가 해방전선(MNLF) 및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 그리

고 루손 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단체인 신인민군(NPA) 등이 대표적인 무장과격단체에 해당됨.

- \* 모로(Moro): 필리핀 남쪽 섬에서 전통적으로 거주하는 회교도들을 지칭
  - 최근에는 남쪽 바실란 섬을 주근거지로 아부 사야프가 이끄는 과격회교단체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들은 독립회교국 건립 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광객 또는 주민을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음.
  - 한편 민다나오 섬의 분쟁은 그 시발이 16세기 스페인의 필리핀 지배가 시작되면서 토착회교도에 대한 천주교로의 개종 과정에 연유된 것으로 알려져 약 500년의 역사가 있음. 특히 1950-60년대에 루손 및 비사야스 지역으로부터 기독교 계통의 주민들이 민다나오 섬으로 대거 이주하자 회교분리 세력들의 활동은 더욱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 비사야스 지역: 루손 및 민다나오 섬 사이에 있는 사마르, 파나이, 네그로스, 체부, 레이테 등의 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지명
  -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세력과 Jemaah Islamiyah(JI)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아부 사야프는 자신의 조직원을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영한 바 있는 알 카에다 훈련소에 파견 훈련시킨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 JI: 198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공동체 형식으로 출범, 동남아 지역에 근본주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al Qaeda 조직과 연관을 맺으면서 테러 활동 전개
  - 1969년에 발족한 NPA는 1950년대 중반 루손 섬에서 발생한 후크발라합 봉기의 근본 이념을 계승하여 농촌지역으로 침투, 세력 확대를 지속한 결과, 1985년 정규군이 25,000명에 달하였으며 전국 농촌의 약 20%가 NPA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
  - 1992년 공산당도 합법정당으로 인정되자 NPA는 국가민주화전선(NDF)을 산하 정당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좌익 정치세력으로 하원에도 진출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유화정책 추진 등이 주효하여 NPA 정규군의

수는 10,000 여명으로 감소하였음.

- 1986년 마르코스의 하야 이후 지난 19년 동안 10여 차례의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음. 2003년 7월에는 특수부대(Scout Rangers) 장교 및 장병 323 명이 마닐라 시내 고급아파트 단지의 고층 1개 동을 급습, 23시간 동안 점거하여 군부내 부패일소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현재 필리핀 군인들은 군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의료시설 및 병영막사의 불충분, 군부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쿠데타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정부 항의시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리핀 국민들은 시위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임. 1986년 2월 마르코스, 2001년 1월 에스트라다의 권좌로부터 축출도 민중의 힘(People Power)이 주도하였음.

## 최근 정국불안 심화의 근인

### □ 대통령의 대선부정 관련 부적절한 통화내용에 대한 시인

-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부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전임 대통령의 잔여임기만 채우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의 불출마를 약속하였음. 그러나 2003년 11월 영화배우 출신으로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의 친구인 페르난도 포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아로요 대통령은 불출마 약속을 깨고 대선 입후보를 선언하였음.
- 2004년 5월 대선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포우와의 접전 끝에 약 1백만 표 차이로 승리하여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그러나 포우는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음.

- 2004년 12월 포우의 사망으로 대법원 소송은 중단되었지만 그의 지지자들의 선거부정 규명 투쟁은 계속되었으며 2005년 5월 2004년 대선기간 중 아로요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부정 관련 부적절한 통화 내용을 도청 녹음한 것을 입수, 발표함. 그 이후 필리핀 의회에서는 녹취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6월 27일 아로요 대통령은 본인이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임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

#### □ 가족들에 대한 뇌물수수 조사

- 아로요 대통령의 남편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청탁과 불법 복권게임 운영자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의회 특별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원 의원인 아로요 대통령의 아들과 시동생도 불법 복권게임 운영자들로부터 각각 매월 50만 페소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아로요 대통령 본인도 2004년 5월 대선 당시 불법 복권게임 운영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반작용

##### ◁조세제도의개혁▷

- 필리핀 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세제 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재정안정화 계획에 의하면 주류 및 담배 물품세율의 인상, 징세 효율성 제고, 연체세금의 탕감, 투자 인센티브의 합리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소득세 산출체계의 조정, 통신 독점망세의 도입 등 8개 조세관련법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임.
- 8개 조세관련법 중에서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2004년 12월, 그리고 징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은 2005년 1월 의회에서 가결되었음.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법안 및 면세대상 축소 법안도 2005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그러나 연체세금 탕감 법안 및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은 200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아직도 상원에서 계류되어 있음.

\* 일곱 번째의 소득세 산출체계의 조정과 여덟 번째 통신독점망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하원에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 2005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되자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위헌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효력중지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발효 후 불과 수 시간 이내에 잠정 효력중지 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취하였음. 2005년 10월 18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효력중지를 해제함.

- 서울 인상과 관련하여 관련업계 및 일반소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가치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로 인해 유류 및 가스, 전기, 국내 항공 및 해운,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비식용 농산품, 문예 창작 등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격인상이 예견됨.

#### ◁정치체제의개혁▷

- 아로요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현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제를 내각책임의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혁 등 경제 관련 사항이 시급하여 헌법 개정작업의 추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입법절차의 쇄신, 관료적 형식주의 탈피, 선거비용이 필요치 않은 선거제 도입, 기존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한 재정비 등도 이번 헌법 개정 작업에 포함됨.

- 연방제 도입은 회교분리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민다나오 섬 등 남부지방의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 기득권층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다. 대외 관계

### □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축

- 1992년 11월 미군이 필리핀에서 완전 철수하였지만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미·필리핀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국의 원격 안보지원 및 합동군사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Arroyo 대통령의 2000년 11월 방미시 46억 달러의 군비지원이 약속되었으며, 2003년 12월 Bush 대통령의 필리핀 국민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음.

### □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제1위 ODA 지원국

- 일본의 대필리핀 ODA 지원규모는 필리핀의 총 ODA 수원액에서 51%를 차지할 정도이며, 이는 2차 대전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2003년 12월 일본과의 FTA 체결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4년 2월 양국간에 1차 협상이 시작되어 상호 교섭이 계속되고 있음.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 WTO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먼저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음.
- 한편 필리핀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잠재적으로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범위내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임.

### □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 관계 정상화

- 필리핀은 사회주의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음.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문제가 간헐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으나 중국과의 양자차원보다

는 ASEAN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희망

#### □ 여타 인접국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 ASEA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더욱이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군대를 파견하여 회교분리주의세력과 필리핀군(AFP)간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등 필리핀 남부지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ASEAN은 1967년 8월 '방콕선언'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설립 회원국임. 현재 ASEAN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총회원국 수는 10개 국임.
- ASEAN의 설립목적은 역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협력,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한 역내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역내 국가간 상호 갈등 해소 등임.
- 매 3년 마다 공식 ASEAN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공식 회의 사이에 매년 비공식 회의가 열림. 1998년 제6차 공식 정상회의에서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모두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형태로 개최기로 결정.

####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1989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21개 국이고 필리핀은 최초 설립회원국으로 참여함.
- APEC의 설립목적은 회원국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

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임.

-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Forum)'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최고의 정책공조 포럼이자 지역경제협력의 '場'이 되고 있음.

#### 4. 종합 전망

- 필리핀은 부족한 재정의 일부를 해외차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정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형편임.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 탈피, 과중한 외채상환부담 완화 등은 필리핀 경제가 추구하는 최우선 과제임. 따라서 재정적자 해소와 관련 있는 제반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단기에 심각한 경제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한편 Abu Sayyaf의 과격회교단체에 의한 테러행위가 사회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지적할 수 있으며, 민다나오섬 회교분리주의 세력들과는 협상에 의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 보임.

#### 〈참고〉 남사군도 영유권문제의 배경 및 필리핀의 입장

##### □ 영유권문제 발생 배경

- 남사군도(Spratly Islands)는 남지나해 보르네오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4개 도서와 400여개 산호초로 구성되어 총해역이 22만 km<sup>2</sup>에 달함.
- 1960년대 후반 유엔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자 인접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촉발됨. 이 군도와의 지리적 위치는 필리핀이 가장 인접해 있으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중국과 베트남은 1974년 1월 및 1988년 3월 두 차례의 무력충돌을 벌였으며, 영유권 주장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군대를 남사군도에 파견하여 군사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향해하는 분쟁 당사국의 어선을 나포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ASEAN은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차례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남사군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

#### □ 필리핀 · 중국간의 분쟁

- 1994년 말 중국이 Mischief Reef(산호도)에 어민 대피소 명목으로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양국간의 분쟁이 표면화되었으며, 1995년 8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분쟁해역의 평화·건설적 사용에 합의하는 공동성명 채택으로 일단락됨.
- 그러나 1998년 10월 중국이 Mischief Reef에 군대를 파견, 시설물을 증축함으로써 양국간의 분쟁은 재연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간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 마련에 실패. 필리핀은 중국과의 양자차원의 해결에는 부담을 느끼고 ASEAN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적 접근에 더 비중을 둠.

#### □ 영유권 주장 관련 필리핀의 입장

- 남사군도가 필리핀의 200 해리 경제수역내에 포함되는 것이 필리핀 영유권 주장의 주된 근거이며,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Pagasa섬 등 8개 도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분쟁해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력의 한계로 Pagasa섬 등에 대한 60~70명의 군대 파견은 상징적 조치로 간주됨.
- 한편 2002년 11월 캄보디아 ASEAN 정상회담에서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채택키로 함으로써 다자적 접근에 의한 문제해결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

### Ⅲ. 주요 산업

#### 1. 산업구조

##### □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세 지속

-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2004년 기준으로 농림어업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부문 32.4%, 서비스산업 부문 53.9%로 나타남.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공업부문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서비스산업부문의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Ⅲ-1〉

####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농 립 어 업	15.8	15.1	15.1	13.0	13.7
공 업 (제 조 업)	32.3 (22.2)	31.6 (22.9)	31.8 (23.1)	32.6 (23.8)	32.4 (23.5)
서 비 스 업	52.0	53.2	53.1	54.4	53.9

자료: EIU viewswire

- 농림어업부문은 GDP 비중에서 공업부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부문별 고용구조에서는 공업부문을 앞서고 있음. 이는 필리핀의 농림어업부문은 생산 및 고용에서 아직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반증함.
- 한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단기에 이익창출이 가능하여 화교 및 화교계 필리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영업실적에서도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면 화교 및 화교계 필리핀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항공회사, 은행, 백화점 및 유통업체들이 상위를 차지함.

## 2. 농림어업

### □ 쌀과 코코넛이 주요 농산품

- 필리핀 수출이 한때 모두 농산품으로 이뤄질 정도로 농업부문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기준으로 농산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지나지 않음.

〈표Ⅲ-2〉 주요 농산품의 수출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금 액	비 중
코 코 넛 기 림	578	1.5
건 조 코 코 넛	100	0.3
야 자 과 육	31	0.1
바 나 나	324	0.8
파 인 애 플	176	0.4
망 고	31	0.1
기 타	325	0.8
계	1,565	4.0

자료: EIU Country Profile

- 필리핀 농업부문의 전통적 주산품은 쌀과 코코넛으로 쌀은 주로 국내수요를 위해 생산하는 정도이지만 코코넛 수확량은 전세계 산출량의 절반에 달함. 쌀농사는 주로 루손 섬에서 이뤄지며 총경작면적은 약 4백만 헥타르이고, 코코넛은 민다나오 섬에서 절반이 재배되고 있으며 총재배면적은 약 3.2백만 헥타르로 집계됨.
- 1998년 엘니뇨 한발로 인해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24%, 코코넛 수확량은 6.6% 감소하여 각각 8.6백만 톤, 12.8백만 톤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주요 농산품의 산출량은 점차 증가하여 2004년 기준 쌀과 코코넛의 수확량이 각각 14.5백만 톤, 14.3백만 톤으로 증대.

## □ 한계산업에 속하는 임업부문

- 임산물의 생산량은 오랜 세월이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1990년대 초반 대GDP 비중이 약 0.5%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준의 임산물 수출액은 미화 33.9백만 달러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한편 아직도 민다나오 섬 등의 오지에서는 불법 벌목이 대단위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어업부문의 경제기여도 증가 추세

- 어업부문의 종사자가 1.4백만 명(2003년 10월 기준)에 이를 정도로 이 부문의 사회기여도는 매우 중요함. 외화획득원으로서도 어업부문의 중요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최근 상업적 어로활동 및 양식어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근해 어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근해에서 다이나마이트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산호초 파괴로 인해 어로자원 고갈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음.

## 3. 광업

### □ 주요 광물자원은 금 및 동

- 필리핀의 주요 생산광물은 금 및 동 등이 해당되고, 여타 광물로는 은, 니켈, 크롬 등이 있음. 최근 광물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4년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를 기록함. 그리고 2003년 기준 금 생산량은 37,844kg, 동정광 생산량은 20,414 톤으로 나타남.

###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기대

- 2004년 12월 필리핀 대법원이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위헌' 이라는 종래의 판정을 취소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1995년 위헌판정으로 인해 40여개 외국인투자 광업프로젝트의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위헌판정 취소



결정 이후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청건수가 28건에 이릅니다.

#### □ 호주 Climax Mining의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 개요

- 호주 Climax Mining이 계획하고 있는 루손 섬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가 2006년 1/4분기 중에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초에는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의 총투자금액은 1억 1,5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생산규모는 금의 경우 연산 9만 4,000 온즈, 동정광 1만 톤으로 추정함. 앞으로 15년 동안 예정 생산규모로 금 및 동정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4. 제조업

#### □ 제조업 개황

- 제조업은 2004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5%를 기록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임. 1950~60년대에는 주로 수입대체품을 생산하여 국내산업을 육성 보호할 수 있었음. 특히 소비재품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음.
- 1980년대 초반부터 중공업분문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제련소, 화학단지,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등의 건설이 정부주도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제조업의 구조는 소비재 생산 치중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음.
- 1970년대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자 및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 수요 충족에 초점이 맞춰진 육성지원정책이 실시되었음.

〈표Ⅲ-3〉 주요 제조품목별 생산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

	전년대비 증가율	비 중
식 료 품	8.8	47.4
전 기 · 전 자 장 비	13.6	12.0
화 학 제 품	7.2	6.6
의 류 및 신 발 류	7.4	1.5
전 체 제 조 품 목	5.1	100.0

자료 : EIU Country Profile

#### □ 수출가공 특별경제지대(EPZs)

-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법률 제7916호)의 제정으로 필리핀 특별경제지대청이 설립되면서 바탄의 마리벨레스에 처음으로 수출가공 특별경제지대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150개의 수출가공구 및 산업단지 등이 전국에 걸쳐 설치 운영되고 있음.
-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자본 양도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음.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국세, 지방세가 면제되고 5%의 특별세만 납부하는 등 여타 기업들보다 많은 추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전국 특별경제지대의 기업에 취업한 총인원수는 약 1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년 중 전국 특별경제지대의 총수출규모가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경제지대에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축소 등을 포함하는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 200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제출된 상태임.

## <참고> 특혜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Clark 특별경제지대

- 필리핀 대법원은 2005년 4월 Clark 특별경제지대는 세제상의 특혜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함. 전미군기지에서 특별경제지대로 전환된 경우 Subic 특별경제지대에만 세제상 특혜제공이 가능함.
- 1992년의 기지전환개발법은 특혜제공에 관해서 단지 Subic 기지만 언급하고 있어 여타 기지들은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해석함. 관련법의 개정 또는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법에 특별조항 반영 등을 통해서 조치하지 않는 한 Clark 특별경제지대에 대한 특혜제공은 불가능해 보임.
- 이처럼 필리핀 법제도의 일관성 없는 시행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증가시켜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음.

### □ 중국의 저가경쟁에 고전

- 필리핀은 ASEAN 역내국들에 의한 국가간 생산설비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및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필리핀의 대외수출경쟁력이 중국의 막강한 저가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제조업의 고용기여도

-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체가 1999년 기준으로 7,451개이고 총고용인원은 110만 명이며, 종업원이 20인 이하인 기업체는 117천 개로 총고용인원은 456천 명으로 나타남.
-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고용기여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나, 이들 소규모기업이 고용기여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5. 건설업

### □ 1993~97년대 건설경기 호조

- 1993~97년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마닐라 수도권에서는 고급아파트 단지, 오피스건물, 쇼핑단지 등의 건설 붐이 일어나, 동기간 중 건설부문이 매년 약 10% 성장하였음. 특히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금융 활성화가 건설부문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97년에는 민간건설가액이 1,230억 페소(3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 아시아경제위기 여파로 건설경기 급락

- 1998년 아시아지역 경제위기 영향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초래되어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동년 중 민간건설가액이 690억 페소로 떨어졌으며, 2002년 860억 페소로 상승하기까지 건설경기는 답보상태에 있었음. 2003년의 민간건설가액이 다시 800억 페소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건설경기가 아시아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 6. 금융서비스업

### □ 금융산업 발전수준이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필리핀 금융기관 총자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아시아경제위기발생 전에 필리핀의 GNP 대비 총통화량이 51.8%인 반면, 말레이시아가 101.1%, 태국은 81.5%로 산출되었음. 이는 동아시아의 여타 인접국들에 비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의미하며, 금융산업의 미성숙이 저조한 투자성향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 1995년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영업을 허용하기 전까지 44년 동안 미국계의 Citibank 및 Bank of America, 영국계의 HSBC 및 Standard Chartered Bank 등 4개 외국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

내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현 체제

- 필리핀은 자산규모가 3,000억 페소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서부터 가족 경영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42개(2004년 기준) 상업금융기관이 있음. 필리핀토지은행(Land Bank of Philippines)과 필리핀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은 국영금융기관이며, 필리핀국민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은 정부가 지분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표Ⅲ-4〉 10대 상업금융기관의 자산규모(2004년 기준)

단위 : 10억 페소

금 용 기 관 명	자산규모(금액)
Metrobank	535.6
Bank of Philippine Islands	465.8
Equitable PCI Bank	306.6
Land Bank of Philippines	291.6
Citibank	229.0
Philippine National Bank	221.1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183.6
Banco de Oro	175.0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158.0
Standard Chartered Bank	144.9
합 계	2,711.2

자료 : EIU Country Profile

-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영업 허용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개 외국은행에 영업허가를 발급함. 필리핀 중앙은행은 추가로 10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국상업금융기관들이 경쟁태세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영업허가 발급계획을 중단하였음.

- 필리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2004년 기준으로 총 14개이고,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며 역외금융 운용은 외국금융기관에만 허용됨. 자산규모에서 10대 금융기관에 속하는 외국금융기관은 단지 Citibank 및 Standard Chartered Bank등 2개 금융기관만 해당됨.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Investment Corporation, PDCP Bank 등의 민간투자금융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영은행인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는 농업부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금융기관의 재정건전화 추진

- 2002년 12월 특수목적자산관리회사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양도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재정상태 건실화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부실자산 양도허용 시한인 2005년 4월까지 자산관리회사에 양도된 부실채권규모가 520억 페소(U\$945백만)에 지나지 않아, 양도허용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 증권시장의 현황

- 1990년 초중반 국제금융계의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 및 민영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필리핀 증권시장의 총주식자본금이 1992년 말 3,530억 페소에서 1996년 말 2조 1,200억 페소(U\$809억)로 크게 신장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98년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의 총주식자본금이 1996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1998년 9월 종합주가지수(PHISIX 지수)가 1,082를 기록하였음.
- 1999년 들어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타기 시작하여 동년 9월 PHISIX 지수가 2,487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00년 들어 Estrada 대통령의 실정 등이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동년 10월 PHISIX 지수는 993으로 추락함.

- 2003년 12월 Arroyo 대통령의 2004년 대선출마 발표가 증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2003년 말 PHISIX 지수가 1,442로 회복되었음. 2004년 5월 Arroyo 대통령의 대선승리, 재정적자해소 관련 세계개혁 추진, 경제의 호조 등으로 증시경기는 계속 상승세에 있어 왔으며, 2005년 중반 대통령 탄핵정국 및 부가세법 시행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5년 10월 말 이후부터 PHISIX 지수가 2,000을 다소 상회하기 시작함.
- 한편 2000년에 제정된 증권법이 내부자거래의 방지, 등록기업의 재무자료 투명성 제고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으나, 증권부문 종사자들의 인맥관계 존중태도 등이 관련 법규정의 엄정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증권시장의 확대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7. 소매유통업

### □ 외국계 유통업체에 대한 소매유통업 참여 불허

- 국내 소규모 소매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계 유통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음. 1999년 기준으로 자동차 소매유통업소를 제외한 총소매유통업소는 298,764개에 달하였으며, 총고용인원은 120만 명으로 집계됨.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걸쳐 마닐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대단위 쇼핑단지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단위의 소매유통구조가 추세로 정착되었음.

## 7. 관광업

### □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및 테러위험이 발전의 저해요인

-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많음.

숙박시설이 마닐라 수도권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등 교통망이 충분치 못한 점, 관광객을 테러대상으로 하는 Abu Sayyaf 회교과격단체의 준동 등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실적

- 1997년 관광산업 실적이 내방객수 222만 명, 관광수입 2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997~98년 경제위기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2004년 내방객수가 229만 명에 이를 때까지 1997년 내방객수에 계속 미치지 못하였음. 한편 2004년의 내방객수는 1997년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관광수입은 20억 달러로 1997년에 비해 약 30% 감소하였음.
- 2005년 상반기 중 관광목적 내방객수는 129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음.

□ 필리핀 관광객의 3대 주류는 미국 일본 한국인

- 2004년 관광목적 총내방객 중에서 미국인이 20.9% 478천 명, 일본인 16.7% 382천 명, 한국인 16.5% 379천 명을 기록하여, 3개국으로부터의 내방 관광객이 전체의 54.1%를 차지함. 2005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인 관광객이 284천 명, 한국인 225천 명, 일본인 201천 명으로 나타나, 한국인 관광객이 내방객수 서열에서 일본인을 앞질러 2위로 올라섬.

〈표Ⅲ-5〉 주요 관광 방문국별 관광객 비교

단위 : 천 명, %

	관광객수		전체비중		증감률('05.6) (전년동기대비)
	2004년	'05년상반기	2004년	'05년상반기	
한 국	379	225	16.5	17.5	25.6
미 국	478	284	20.9	22.1	12.3
일 본	382	201	16.7	15.6	9.3

자료 : EIU County Profile



- 2005년 상반기 중 필리핀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46천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이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138.8%를 기록하여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가능성을 암시함.

## IV. 외국인투자 환경

###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가. 외국인투자 정책

#####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환경 제공

- 필리핀에서는 1967년 공업화촉진을 위한 투자우대법(Investment Incentive Act)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68년 투자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가 설립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음.

#### <참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의 성격

- 외국인투자 촉진, 투자업무의 효율화, 외국인투자의 허가 및 감독 등을 관할하는 기관
- 주요업무는 ① 투자우선순위 작성, ② 외국인투자의 신청접수, 검토 및 승인, ③ 외국인의 필리핀 내 취업을 위한 관리청에의 협조 요청, ④ 외국인투자업체의 투자법규 이행여부 감독, ⑤ 등록업체의 인센티브 부여기간 연장 및 중지결정, ⑥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및 사업활동 관리통제, ⑦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안내 및 정보제공 등임.

- 1980년대 말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 투자에

관한 모든 법령과 인센티브를 통합한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s Code : OIC)이 도입되어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가 일원화되었음.

-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현행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 FIA)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3월 필리핀인 해외교민에 대한 투자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 개정.
- 1987년의 종합투자법(OIC)에 따라 투자분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1999~2004에 의해 농업 발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였음.
- 1992년 8월에는 외국인의 외환송금 및 외환보유를 전면 자유화하였고, 1994년 5월에는 외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그 결과 1995년 중 10개의 외국은행이 영업을 개시하였음.
- 1995년에는 국적 제한조건이 철폐되어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분투자가 허용되었으며, 1996년 3월에는 소위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 축소되었음. 또한, 1998년 2월에는 석유산업의 2단계 규제완화 조치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1999년 11월에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관한 조건 등이 명문화되었음.
- 2000년 8월 발효된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에 의해 외국계기업의 주식 공시, 내부자 거래 및 주가조작 등에 관한 감독·규제가 강화됨.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나. 투자관련법규

### □ 주요 외국인투자관련법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

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는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1996년 개정),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of 1993), BOT(Build Operate Transfer)법, 특별경제지대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기존의 수출가공지대청법 통합) 등이 있음.
- 종합투자법(OIC)은 기존의 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 및 외국인 사업활동규제법 등을 통합화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조치를 일원화시킴.
- 외국인투자법(FIA)은 OIC의 외국인 투자제한품목 관련내용을 대폭 개정, 투자제한방식을 종래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비율을 완전 허용하였음.
- 또한 수출기업의 의무출자비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BOI의 사전심의에 의한 외국인기업 설립허용,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등 외국인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1993년 6월 제정)에 의해 외국인 토지임대기간이 종전의 최대 50년에서 추가로 25년 재연장이 가능해졌음. 또한 1994년에는 BOT법이 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1995년의 특별경제지대법(SEZA)은 농업, 상공, 관광, 금융, 투자 및 재정센터로서의 특별경제지대를 개발하여 별도의 세제상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수출가공지대 및 산업공단 등지의 특별경제지대를 관장하기 위한 특별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이 창설되었음.

## □ 지적재산권 보호법

- 필리핀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Paris Convention(1965년), 문학 및 예술작품 활동 보호를 위한 Bern Convention (1951, 1997년), Rome Convention(1984년)의 서명국임.
- 지적재산권 사무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기술이전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규제를 관장하고 있음.
- 특허법(1947년)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0년간(갱신 불가)이나 의장권의 경우에는 5년간이며 그후 2회에 걸쳐 5년간 갱신도 가능하고,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7년간(갱신불가)만 유효함.
- 상표법(1947년)에서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부여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10년간 갱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보호법(1972년)에 의하면 저작권은 작품의 최초 완성일로부터 발효되고 저작자의 사후 50년을 합산한 기간내 보호받으며 국립도서관에 등록하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

## 다. 투자 절차

### □ 투자절차의 개요

- 1991년 외국인투자법(1991년 7월 1일 발효)에 의해 외국인투자시 100% 외국인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음. 1996년 10월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의 축소 및 1997년 2월 발효된 석유정제산업의 규제철폐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
-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자본금 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첨단기술 도입 등)에는 가능함.
-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신규투자는 BOI에 신고할 필요없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나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규정/소비자보호국(Bureau of Trade Regul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BTRCP, 개인 기업의 경우)에 직접 등록할 수 있음.

### <참고> 외국인투자법의 투자인센티브

- 수출형 투자업체 혹은 투자우선계획(IPP)에 의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내용: ① 소득세 면제, ② 자본재 및 원부자재 반입시 관세 및 내국세 면제, ③ 부두 사용료, 수출세 및 제반 관련요금 면제, ④ 투자철회 보장, ⑤ 외국인투자분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징발 제외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의 외국인투자자는 BO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경제지대내의 인센티브는 PEZA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함. 이 경우 BOI가 정한 형식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등록 신청절차는 원칙적으로 SEC나 BTRCP에 의해 신청서 수령후 3일 이내에 완료되나 실제로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4~6주 이상이 걸리기도 함.
  
- 프로젝트를 확장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인센티브를 부여받거나 자본을 증자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프로젝트 확장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반입할 경우에는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BSP,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 : I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석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 투자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E), 천연자원 탐사 및 잠재적인 공해산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DENR)에서 관장함.
  
- 기업간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신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2000)에 의해 인수·합병 회사는 소액주주에게 주식인수청구권을 제공하여야 함.

- 허가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직원 채용, 사업부지 선정 및 공장건설, 기계 및 원자재 수입, 환경저해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요구되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시 BSP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사업 청산시에는 투자사업 허가기관에 청산보고를 하면 됨.

## □ 회사설립

-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주식회사로 회사존속기간은 최대 100년(최초 50년 인가, 추가로 50년 갱신 가능)까지임. 증권규제법에 의해 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설립시 수권자본금의 25% 이상 출자되고 납입자본금의 25%(최소 5천 페소)이상만 납입되면 되나, 정책상 외국인의 초기 출자금은 설립당시 전액 납입되어야 함.
-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 15인 이하(필리핀 거주자 과반수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공증필)을 SEC에 제출, 등록하면 SEC는 정관을 검토한 후 회사설립증서를 교부함.
- 법인 설립을 위해 SEC에 제출할 서류로는 회사의 명칭, 회사정관 및 내규, 회계경리인 진술서, 예금잔고증명서, 은행계좌명 확인서, 임원/간부직원/주주에 관한 인적사항, 주주의 납세번호 등임.
-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 승인증명서(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환송금증명서, 외국인 거주증명서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을 BOI에 제출하면 되고, 투자허가기관은 관련 서류 검토후 투자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외에도 회사설립 신청인은 법률 및 재정상태 등의 승인을 위해 3부의 관련서류를 등록청(Records Division)에 제출해야 되며, 관할 자치시에 영업신고, 중앙은행에 투자신고, 사회보장공단(Social Security System)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회사설립 신청인은 설립증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주식 의결권, 임원의 자격, 임기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BOI, BSP 및 SEC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됨. 대부분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자본금 증자, 회사정관의 변경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해서는 2/3의 찬성이 요구됨.
- 외국기업은 SEC에 등록하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SEC는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사본, 본지점간 관계증명서(certificate of reciprocity), 필리핀 거주자 앞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재무제표, 최근 연차보고서, 회사정관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라. 투자 유관기관

### □ 투자유관기관의 기능

-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위원회(BOI)의 주관으로 실행되고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문의하여야 함.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관기관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증권거래위원회(SEC),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노동부 등이 있음.
- BOI는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의와 허가사항을 관장하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우선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BOI는 외국인투자 상담실을 개설, 투자절차안내 및 등록업무 등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IPP에 따라 승인된 투자분의 통계치를 매월 공개하고 있음.
- BSP는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BOI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관계업무를 하고 있고, SEC는 법인 설립허가 및 주식 공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PEZA는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일차적인 허가 및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정보센터(OSAC)는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 투자유관기관의 연락처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 BOI)

o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o Tel : (63.2) 890-1332/897-6682/890-9308

o Fax : (63.2) 895-3512

o Homepage : <http://www.boi.gov.ph>

- 외국인투자정보센터(One-Stop Action Centre : OSAC)

o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o Tel : (63.2) 896-7884/7342, 895-8322

o Fax : (63.2) 895-3521/8322

- 필리핀 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

o 주소 : 6th Fl, Almeda Building III, Roxas Blvd Corner San Luis St, Pasay City

o Tel : (63.2) 551-3454/3455

o Fax : (63.2) 891-6380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

o 주소 : Central Bank Bldg, A Mabini St, Malate, Manila

o Tel : (63.2) 524-7011 ~ 53

o Fax : (63.2) 523-3461

o Homepage : <http://www.bsp.gov.ph>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o 주소 : SEC Bldg. EDSA near Ortigas Ave, Greenhills, Mandaluyong, Metro Manila

o Tel : (63.2) 726-0931 ~ 39



o Fax : (63.2) 725-4399

o Homepage : <http://www.bsp.gov.ph/home.htm>

-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NEDA)

o 주소 : sa Pasig Bldg, Amber Ave, Pasig, Metro Manila

o Tel : (63.2) 631-0945 ~ 68

o Fax : (63.2) 631-3747

o Homepage : <http://www.neda.gov.ph>

- 노동/고용통계국(Bureau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 BLES)

o 주소 : 3rd Floor, Dole Bldg, Gen Luna Corner San Jose St, Intramuros, Manila

o Tel : (63.2) 527-3577/3578

o Fax : (63.2) 527-3579

- 지적재산권 사무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

o 주소 : IPO Bldg, 351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o Tel : (63.2) 890-4894/4939, 897-1724

o Fax : (63.2) 890-4939

o Homepage : <http://www.dti.gov.ph/ipo>

## 2. 투자우대정책

### 가. 일반적 인센티브(세제)

#### 인센티브 받으려면 BOI 등록 필요

- 필리핀은 고용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기술수준 제고, 경제발전의 기초 제공, 국제경쟁력 배양 및 수출 기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산업으로 분류하는 석유, 석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종합투자법(OIC)에 의해 규정된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있는 BOI에 등록하는 절차가 요구되며, OIC의 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BOI가 매년 발표하는 IPP에 합당해야 됨.

## 나. 투자위원회(BOI)의 주요 인센티브

### □ 금전적 인센티브

- 신규 프로젝트(개척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6년)간 부여(단, 국내자원 사용, 종업원대비 자본설비 비율 충족, 최초 3년간 연간 50만 달러 이상 저축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RA 7369에서 규정한 자본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
- 생산제품의 70% 이상 수출시 수입부품에 대한 면세
- 수출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세 면제 가능, 보세 제조/무역시스템의 수혜
- 비전통적인 제품 수출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각종 세금 및 부두사용료 면제

### □ 비금전적 인센티브

- 설비, 부품, 원자재 수입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
-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독, 기술 및 고문직에 외국인 고용 허용
- 1998년 IPP에 따르면, 투자우선사업으로 수출지향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이외에도 개별 산업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관련 프로젝트 추진, 주택건설, 자동차산업 활성화, 사회복지사업, 관광 및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BOI에 등록된 기업이 IPP에서 규정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 수출관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부두사용료, 수출부과금 및 수입관세(생산제품 70% 이상 수출시)를 면제하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위의 경우 신규로 등록된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에 대해서는 사업개시후 6년간, 비개척산업(Non-Pioneer Industry)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8년간 면세연장이 가능하며 등록기업이 사업을 확장한 경우 확장분에 대하여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음.
- 한편, 종합투자법(OIC)에 규정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개척산업일지라도 개척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전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함. OIC규정에 따르면 IPP에 제시되지 않는 사업분야라도 외국인투자자(외국인지분 40%이상인 기업)는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해야 일반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내 보세창고를 설치, 부품 원자재의 공급기지로 활용할 경우 보세창고에 입하되는 수출용 부품,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하여 세금부과가 면제되며, 사업운영을 위해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필리핀내로 유입할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다.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 투자장려산업은 개척산업과 비개척산업으로 구분하여, 개척산업의 경우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새로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및 식품가공 등 농업원료 가공업, 비재래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투자장려업종은 투자위원회가 매년 발표(4월 1일 발표)하는 IPP에 의해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적극 우대하고 있는 분야는 수출지향형 프로젝트,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근로자의 기술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등임.

- 자동차 사업자는 승용차발전프로그램(Car Development Programme : CDP)과 상용차발전프로그램(Commercial Vehicle Development Programme : CVDP)에 의해 자동차 제조 및 완전조립(Completely Knocked-Down : CKD) 장치의 수입에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음. 한편, 1998년 1월 21일부터 CKD 수입관세율을 7%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분조립(Semi-Knocked down: SKD) 수입관세율은 자동차 수출비중이 70%이상인 경우 6개월간 (6개월 연장가능) 3%로 적용되고 있음.
- 가전제품 수출촉진 프로그램(Progressive Export Programme for Consumer Electric Products : PEPCEP)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70% 이상 수출시 CKD형태의 수입, 잉여금의 재투자를 위한 세금공제, 기계류,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음.
-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이고 과거 5년간 의복직물수출위원회(Garment and Textile Export Board : GTEB), BSP 및 관세국(Bureau of Customs : BC)에서 정한 무역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의복 수출업체는 수출상품의 제조시 수입 원재료의 사용에 관한 통상산업부의 감사의무를 면제받음.
- 필리핀 광산법(Philippine Mining Act of 1995) 및 RA 7942에 따라 광산 투자업체는 광물에 대한 물품세를 2~5%에서 1~2%로 인하하였으며, 최대 81,000ha를 채굴할 수 있음. 또한 사업개시 최초 10년 이내에 발생한 순운영손실을 최초 5년간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 종합투자법에 의하면, 저개발지역에 입지한 기업에 대하여 개척산업의 인센티브 부여, 6년간 소득세 감면기간 적용,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 편의시설의 이용에 따른 지출의 100% 세금공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2배)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음. 투자우선지역은 통상산업부의 지방사무소에 의해 지정되며, 이 지역은 원자재, 인력, 기술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용성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음.

## 라. 투자규제조치

### □ 개요

- 1987년 종합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외국 기업에 대한 이런 차별적 조항은 1991년의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투자 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투자우선계획에 해당되는 사업, 생산량의 최소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직접투자(단독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를 List A와 List B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List A는 헌법, 특별법 및 국제협약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는 분야로 대부분 금지되고 있고, List B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안전, 국방, 보건, 공중도덕 및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분소유를 제한함.
- 현지부품 사용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투자허가시 행정지도 등 현지부품의 사용비율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주요 품목별 현지부품비율 준수기준을 보면, 의류 35%, 여객용 차량 40%, 트럭 27%, 자전거 51% 등임.
-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은 필리핀인 고용의무가 있으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리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은 등록후 5년간 관리직, 전문기술직 및 고문직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된 기간내에서 고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관리직의 고용기간 연장은 제한받지 않음.
- 기존의 석유산업 규제완화 법안중 원유 및 정유제품에 대한 3%의 단일 수입관세율은 원유3%, 정유제품 7%로 차등 적용하려던 법안이 1997년 11월 위헌판결(공정거래제한)을 받음에 따라 1998년 2월 의회는 정유업계가 연간 매출액의 10%(40일분의 공급분량)에 상당하는 재고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효화하는 등 외국인기업의 석유산업 참여를 고취하는 법안을 의결하였음.

## □ 지분소유 제한

-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업종

〈List A〉

- 지분소유 금지 업종 :

협동조합, 방송매체, 사설경호안전기관, 소매업, 전문면허를 요하는 서비스업, 소규모 광산업,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자원 이용, 투계장 운영, 핵무기·생화학무기·폭죽 제조

· 25% 지분소유 허용 업종 :

현지 및 해외인력 채용, 정부발주 국내 프로젝트  
(BOT 또는 국제입찰방식 제외)

· 3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광고업

· 4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쌀·옥수수 경작업, 공익시설의 운용·관리, 교육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교육기관, 심해 상업어선 운영, 공기업에 대한 물자조달업, 부동산 소유(천연자원의 개발·이용), BOT 프로젝트의 관리(공익시설 프랜차이즈)

〈List B〉

· 최대 6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SEC에 의해 규정된 금융업, SEC에 의해 규정된 투자업

· 최대 4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화기 및 폭발물(필리핀 국립경찰의 사전허가 필요), 군수 및 우주사업(국방부 사전허가 필요), 공중도덕 및 보건 위해사업,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이하의 국내영업기업, 첨단기술 보유 또는 상근종업원 50명 이상이면서 납입자본금이 최소 10만 달러인 국내영업기업

(자료 : EIU, Country Commerce)

- RA 8179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였음. 또한 기존의 List C를 폐지하고 시민권이 없는 필리핀내 거주민들의 투자권리를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범위를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50만 달러(FIA 규정)를 2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음.

- 1997년 10월 Investment Houses에 대한 외국인의 의결주주 한도를 최대

51%(1973년 투자회사법)에서 60%로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2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Finance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40%(1969년 Finance Company Act 및 List A)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는 2년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의해 외국인투자제한품목(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FINL)으로 지정됨.

#### □ 부동산 취득 제한

- 플랜트 및 빌딩 건축, 토지 개량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주택토지사용규제위원회(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의 허가서(1~2주 소요)를 받고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됨.

- 1987년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필리핀인의 참여지분이 60% 이상인 사업체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는 임차만 허용되며 임차기간은 최대 50년(1993년 6월에 발효된 투자자리스법에 의해 기존의 25년에서 2배로 확대)이고 추가로 25년간 연장할 수 있음.

### 3. 외국인투자 여건

#### 가. 무역제도

##### □ 수출입제한

- 필리핀은 산업경쟁력의 배양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공업화 및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산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수출신용 확대,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 당국은 1986년 IMF 및 세계은행의 권고로 수입자유화 계획을 마련, 5만 달러 이상의 기계류 수입시 공급자의 신용제공 의무의 폐지, 시중은행의 수입예탁금 자율결정, 투자위원회 등록기업의 자본재 수입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입규제 완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 수출시 과학실험 목적을 제외하고는 소관 정부기관의 수출허가를 득해야 되고 전략물자와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알바니아, 앙골라, 이집트, 라오스, 리비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북한에 대한 수출은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필리핀 국제무역공사(PITC)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품목의 리스트는 Export Assistance Network가 관리함.
- 1981~94년간 2,7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을 철폐한 수입자유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1996년 4월의 RA 8178에 의해 옥수수, 설탕, 가금, 가축, 비료 및 사료 등의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수량제한을 모두 폐지하는 등 대체적으로 상품 수입이 자유로운 상태임.
- 수입시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쌀, 필수 화학제품, 시안화 나트륨, 페니실린, 석탄, 폭발물 제조용 화학제품, 살충제, 자동차와 그 부품 등임.
- 수입물품의 통관절차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o 수입 신고서, 상업송장(견적송장), 원산지 증명서 및 선하증권
  - o 취소불능 L/C, 은행 지급보증서(창고증권) 및 수입화물 적하목록
  - o 관세청(소관부처)에서 요구하는 관계서류
- 신용장(L/C) 거래는 500달러 이상의 물품수입시 요구되고 있으며, 인수도어음(D/A) 및 당좌거래에 의한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3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국(Bureau of Customs)이 자동세관운영시스템(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을 통해 수입통관을 운영하고 있음. 동 시스템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품목을 분류: 저위험 품목은 그린라인(통관 2시간), 중위험 품목은 옐로우라인, 고위험 품목은 레드라인(통관 4일). 그러나 실제로 고위험 품목의 경우 통관 검사가 2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 순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반시에는 5000페소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 □ 관세제도

- 1981년 이후 포괄적인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4,353개 품목에 대한 관세 구조의 단순화와 균일화를 위해 관세분류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관세수준도 10~50%에서 10~30%로 인하하였음.
- 수입금액이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L/C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L/C 개설시 수입자는 수입관세 전액과 선금판매세(수입금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함.
- 수출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관세환급을 하는 영세율(zero-rated)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는 면제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1991년에 아세안 역내 지역통합의 단계로 결성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1993년 1월 공동유효특세관세(CEPT)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관세인하 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최종 0~5%까지 인하하고 비가공 농산물도 관세인하 대상품목에 해당됨.
- 또한 1994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후 역내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Bogor 선언에 의하면 역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신흥투자국(Emerging Markets)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 □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 ① 수출 인센티브

- RA 7844(일명 'Magna Carta for Exporters')에서는 수출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재의 L/C 개설전 수입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수출제조에 투입되는 자본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 생산 및 포장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5년간 세액공제 등의 특혜를 수출산업에 보장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 EPZ) 소재기업에 관한 인센티브 조치를 포괄한 RA 7916은 특별경제지대에 소재한 수출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o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4년 → 8년)

o 수입 자본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 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o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후 국세 및 지방세 면제(총수익의 5%를 특별세 명목으로 납부)

o 수입대체를 위한 세액공제 시행

o 부두사용료, 수출세, 수출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o 국내 자본설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o 종업원에 대한 연수비용의 추가공제

o 외국인투자자(직계가족)에 대한 영주권 부여

o 외국인 고용권 허가

o 인건비 추가공제

-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PEZA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우선 입주기업으로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부속서류도 제출하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② 수출가공지대(EPZ)

- 수출확대, 공업화촉진,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1970년의 대통령령 제66호에 의거, 현재 Bataan, Mactan, Baguio City, Cavite의 4개 지역에 수출가공지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수속의 간소화와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부여되며, 경제지대청(PEZA)에서 등록허가를 받은 후 중앙은행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는 공업단지로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세지역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고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며 입주기업은 BOI 등록기업과 동일한 투자우대조치를 수혜함.

- 수출가공지대 입주절차(투자신청에서 승인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 o PEZA와의 투자상담, 정보입수 및 신청서 수령
- o PEZA에 관련서류 제출(제출전 회계과에 1천 페소 지불)
- o PEZA 2주내 심사후 이사회에 심사의견 상정
- o 이사회 2주내 승인여부 결정
- o 투자승인 즉시 투자자에 통보, 승인후 20일 이내 등록서에 서명  
(등록서 서명시 수수료 1천 페소 지불)

- 수출가공지대내 입주 유망업종을 살펴보면, Bataan 지대에서는 리스, 통신, 주택, 금융, 선박, 전력 및 용수 산업, Mactan 지대에서는 중소규모 경공업, Baguio City 지대에서는 통신설비 및 주택 산업, Cavite 지대에서는 전력, 용수, 통신설비 산업이 각각 유망한 분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③ 자유무역지대(FTZ)

- 정부 당국은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을 제정하여 산업공단, 수출가공지대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고하였으며, 수빅만 자유무역항(Subic Bay Freeport : SBF)과 클라크 특별경제지대(Clark Special Economic Zone : CSEZ)를 특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FTZ)로 설정하고 있음.

- 수빅만권역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SBMA)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 수빅만 자유무역항은 Manila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하고 부지는 7천 ha임. SBF는 천연 심해항구로서 숙련된 영어구사 노동력, 복합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소, 양호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및 항구 등의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SBF에 소재하는 기업은 원자재, 자본설비 및 소비재 수입시 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운영소득에 대한 5%의 최종 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면제, 100%의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

- 클라크기지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 CDC)가 통제하는 클라크 특별경제지대(CSEZ)는 Manila에서 80km, SBF에서 7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1,020ha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CSEZ에는 50mw의 발전소, 용수, 저장탱

크 및 통신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

## 나. 외환제도

### □ 외환통제

- 필리핀 은행연합회(BAP)는 1998년 1월 6일부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제를 적용하여, 하루중 전일 가중평균환율의  $\pm 6\%$  변동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우선  $\pm 4\%$  변동시 30분간 휴장하고, 거래재개후  $\pm 1\%$  변동시 1시간 휴장하며, 다시 거래재개후  $\pm 1\%$  변동시 외환거래를 정지하는 시스템임.
- BSP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가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외환 통제를 하고 있는데, 1992년 9월 경상거래에 관한 외환규제를 완화하여 거주자의 외화매매와 비거주자의 외화보유를 자유롭게 허용하였음.
-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지만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페소화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1만 페소 이상되는 필리핀 페소화의 대내외 송금시 BSP의 승인이 요구되며, 외국인(주도)기업이 외환수령액을 페소화로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 과실 송금

- BSP 또는 저축은행에 적법하게 등록된 모든 투자에 대하여 완전하고 즉각적인 자금송금이 허용되며, 현지은행은 BSP의 승인없이 외환으로 전환한 투자수익을 매각, 송금할 수 있음.
- 과실송금은 BSP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지분투자의 경우 상업은행(보험회사, 석유회사 포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 또는 상장증권투자의 경우 저축은행 또는 증권 중개인에 의해 취급되고 있음.
- 미결 재투자분 또는 과실송금도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될 수 있으나 당해 은행은 BSP에 예치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세후 이자수익을 포함한 최종적인 과실송금은 BSP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다. 금융제도

### □ 개 요

- 외국인은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으나 외국기업은 현지에서 필요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장기자금 조성은 대개 다국적 금융기관의 대출 및 차관공여국의 공적원조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개발프로젝트 등으로 제한받고 있음.
- 필리핀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특수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대출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Company's Borrowings : ICFCB)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 가능.
- 대규모 금융기관을 universal banks('unibanks')라고 하여 모든 상업 및 투자금융서비스를 담당하며, Metrobank,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Philippine National Bank 및 Equitable PCI Bank 등이 해당됨.
- 1994년 5월의 은행자유화법(RA 7721)은 5년내 완전 상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0개 정도의 추가적인 외국은행의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1995년에 기존의 4개 외국은행에 추가로 10개의 외국은행(지점 및 자회사 형태)의 설립을 허가한 바 있음.
- 2000년 5월 발효된 일반은행법(RA 8791)은 추가적인 금융자유화 일환으로써 향후 7년 간 외국은행의 무제한적인 국내은행 소유를 허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HSBC, Standard Chartered, Banco Santander, Chinatrust,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등의 은행이 국내은행을 합병하거나, 지점 개설 허가를 획득하였음. 그러나 7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60%로 하향조정 될 예정임.
- 필리핀 수출/대외차관 보증공사가 수개의 상업은행과 협조하여 신용도가 높으

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Packing Credit과 수출금융을 보증하고 있음(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

#### □ 단기금융

- 선도적인 unibank 및 투자회사(investment houses)에 의한 단기대출 및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적인 형태의 단기금융 상품이며, 자금시장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려는 기업은 적법한 은행과 투자회사와 거래하여야 함.
- 1994년 중앙은행 규정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대출시 우대지역에서의 프로젝트 및 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용보증이 부여되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금융시 현지은행의 외화로 상환하거나 재대출할 경우 정부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단기자본 조성을 위한 대외신용은 자유로운 편임.

#### □ 중장기금융

- 중장기금융은 정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재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필리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의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의해 대부분 취급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도 주로 신디케이트 형식을 통해 중장기 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이 중장기금융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금융기법과 대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1992년의 중앙은행의 Circular 1389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현지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1996년 8월 통화당국은 5% 이상의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가하였던 Circular 572를 폐지, 1997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 라. 조세제도

## □ 조세제도의 개요(감가상각)

- 2004년 10월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안정화 계획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을 때 매년 800억 페소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추진 중에 있는 8개 관련법의 정비작업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에 재정수입 확대가 대폭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1996년 7월 RA 8181에 의해, 관세평가의 기준이 국내소비가격('home consumption value' : HCV, 원산지 수입상품의 현지 도매가격) 방식에서 송장가격(브뤼셀의 'definition of value' 수준)을 기준으로 한 수출가격(export value : EV)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1997년 12월 의회는 소득세 체계 및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탈세 및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혁법(RA 8424)을 의결하였음.
-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법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정액법(straight-line basis)이 행해지고 있으며, 석유생산에 직접 관여된 고정자산은 10년의 내용연수로 이중정률법(double-declining-balance method) 또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되고 있음.

## □ 소득과세

- 외국기업은 전년도에 필리핀내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며, 거주자는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총소득에 대해 과세됨. 과세 대상 소득은 총소득에서 통상경비와 필요적 경비를 공제하면 되고 공제경비로는 손실, 부실채무, 이자지급분, 감가상각비, 세금납부액, 과세소득 5% 이하의 기부금, 연구 및 개발비, 로열티 및 기술용역수수료 지급분을 포함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영업하는 법인은 발생소득에 대하여 32% (또는 총소득의 15%)의 법인소득세를 통상 매 분기 회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회계 연

도 전체의 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납부는 회계 연도 마감 후 4개월 쯤의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함.

- 소득세 납부 기한 경과시, 총 세금의 25%에 해당하는 체납비가 25%의 연이자와 함께 징수됨. PEZA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세후 순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경우 15%의 추가세율(석유관련 사업의 경우 7.5%)을 부담하게 됨.
- 과세대상이 될만한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계산된 소득세가 최소법인소득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법인소득세(Minimum Corporate Income Tax)로 총소득의 2%를 납부해야함.
- 특정사업별로 법인소득세는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항공우편서비스를 하는 운수회사에 대해 지불한 필리핀인 총소요경비의 2.5%, 외국인 상호생명보험회사의 필리핀인 보험가입에 따른 총투자소득 및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의 10%, 역외금융기관(OBUs) 소득의 0%(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적용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의 경우 근로성소득(Active Income)에 대해 계층별로 과세대상소득의 5~30%(1998년부터 순사업소득구분 폐지)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총소득의 15%,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25%의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로열티, 이자(달러화 예금이자 7.5%적용)등 수취소득에 대하여는 20%의 단일세율로 원천 분리과세함. 내외국법인은 주식판매시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이 투자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됨.

#### □ 소비과세

- 1994년 5월 RA 7716에 의해 제정된 확대 부가가치세(expanded VAT : E-VAT)법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호텔, 레스토랑, 음식제공업(catering), 채권판매, 통신, 운수 및 보험회사의 판매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저작권)의 판매 및 임대 등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 종전의 판매세(Sales Tax), 보상세(Compensating Tax) 등 간접세에 대신하여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액 50만 페소(E-VAT 발효전, 20만 페소) 이상인 기업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출액이 10만~50만 페소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를 물품소비세로 부과하며, 10만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는 비식품 농산물, 해산 및 임산제품 등 1차산품의 판매,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 식품의 수입 및 판매, 인쇄 및 출판, 5천톤 이상의 선박 수입, 가재도구의 수입, 의료 및 교육서비스, 1백만 페소 미만의 부동산 거래, 월간 8천 페소 미만의 숙박시설 임대 및 연간 매출액이 10만 페소 미만의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참고> 부가가치세제 변경내용 요약

-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 비식용 농산품의 매매,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인쇄 및 출판업 등(2005년 7월부터 면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세율 인상조건 및 시기 : 2005년 재정적자가 GDP의 1.5% 초과하는 경우 2006년 1월부터 인상
- 부가세율 인상 및 신설 내역 :
  - 최고율 부가세 인상폭 : 2% (10% ⇒ 12%)
  - 기초 식품류는 국내산일 경우 6% 수입품일 경우 8%의 부가세율 적용
  - 전기 및 유류제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법시행 1차년 4%, 2차년 6%, 3차년 8%, 4차년 12%로 인상
- 세율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실제 시행에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마. 노동여건

### □ 개요

- 2004년 노동인구는 3,580만 명이고 실업률은 11.8%로 추산됨. 노동력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메트로마닐라 13.5%, 남부 Tagalog 13.2%, 중부 Luzon 9.7%, 서부 Visayas 9.0% 등으로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동력의 산업별 분포현황은 농업 37%, 산업 16%,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로 추정됨.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까지 매년 850,000명의 새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숙련 노동자의 해외유출이 많고 노동자의 고용은 주로 신문, 광고에 의존하고 있음. 노동력의 평가 측면에서는 낮은 문맹률, 영어 능통,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습득능력 등으로 임금수준에 비해 노동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근로조건(노동법, 근로시간 등)

- 1976년 2월에 발효된 필리핀 노동법(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대통령령 442)이 모든 노동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성차별 등의 불공평한 관행을 인식하고 파업 및 폐쇄로 인한 난관 협상의 기준을 다루고 있음.
- 제조업의 정규 근무시간은 생산직 주 44~48시간, 사무직 주 40시간이며, 시간외 근무는 가능하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교통불편과 치안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 기준월급의 125%, 공휴일 및 주말 근무시 150%(8시간 초과시 160%), 야간근무(22:00~06:00)시 110%를 주고 있으며, 법정 휴가로 5일간의 연가, 45일간의 출산유급휴가, 15일내의 병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해고 1개월전 노동부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인건비 절감을 위한 설비도입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근무연수에 1개월분의 급여를 곱한 금액을,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해고시 1개월분의 급여 또는 근무연수에 1/2개월분의 급여를 곱한 금액중에서 많은 쪽을 각각 수령할 수 있음.

-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노동의무의 습관적인 태만, 사용자(가족, 권한대행자)에 대한 범죄행위, 근로와 관련된 사용자의 적법 명령에 대한 부당행위 및 고의적인 불복종, 사기 및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의 고의적 배반, 사용자의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절약형 설비도입 및 인원조정에 따른 해고 등이 해당됨.

## □ 노동조합

-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유노동자연합(Federation of Free Workers), 필리핀 노동조합총협의회(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5월 1일 운동(Kilusang Mayo Uno) 등 3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 명쾌한 노동정책,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 및 향상된 노동관리규정으로 노사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음.
- 노사분규는 불공정적인 관행 및 협상 난항으로 대개 촉발되는데, 과거에는 노동쟁의가 빈번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업 위협으로 노조활동이 사내 중심으로 위축되었고 파업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관여에 의한 노동쟁의의 중재 비중이 늘고 있음

## □ 임금수준

- 노조파업이 정치적인 동기보다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발생됨에 따라 최근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 노동조합 및 경영주 등 3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노동중재위원회(Tripartite Labor Advisory and Consultative : LACC)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결정함.
- 법정 최저임금은 생계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게 결정되며, 2005년 2월말 현재 마닐라 수도권 기준으로 하루 최저임금은 비농업부문이 300페소(타지역 170~255소)이고 농업부문이 263페소(타지역 170~230)임.

##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 1. 교역 및 투자 현황

#### 가. 교역 현황

##### □ 교역규모 5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유지

- 2005년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2,669백만 달러, 수입액은 1,90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767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임. 최근 3년 동안(2002/04년)의 연평균 수출이 7.0%, 수입은 6.5% 증가하였으며, 매년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이 7.9%였음.
- 대필리핀 수출은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필리핀의 수출증가에도 다소 기여.

##### □ 최근 들어 부진해진 대필리핀 교역, 현지투자진출 저조가 주원인

- 최근 3년 대필리핀 수출추이는 2002년 16.4%, 2003년 0.8%, 2004년 13.6%의 증가율로서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05년 1~10월의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5.7%로 급감하였음.
-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은 2002년 2.6%, 2003년 5.2%, 2004년 7.9%의 증가율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5년 1~10월에도 10.0%의 수입증가가 있었음.
- 최근 들어 대필리핀 수출이 부진한 것은 현지 정치·경제의 불안정 요인 지속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필리핀 투자진출 기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선진국의 반도체 수요 변동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전자부품 등 특정품목 교역집중은 현지투자진출과의 연관 반증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산업용전자제품 등이며, 2005년 1~10월 기간중 전체 수출에서 전자부품의 비중이 37.1%로 나타나 수출구조가 특정분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출 전자부품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 조립용반제품, 컴퓨터부품 등으로 대부분 재수출용 완제품 조립에 사용되거나, 바로 제3국 시장으로 재수출됨.
- 주요 수입품목도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농산물 등으로 구성되며, 2005년 1~10월 기간중 전체 수입에서 전자부품이 51.5%를 차지하여 수출과 비슷한 구조를 보였음. 이처럼 대필리핀 수출입구조가 비슷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투자진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수입 농산물 : 코코넛 및 관련제품

- 수입 농산물의 대종은 코코넛, 코코넛 기름 등이고, 망고, 파파야에 대한 수입규제가 2000년부터 해제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새우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표 V-1>

한 · 필리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2,950	16.4	2,975	0.8	3,379	13.6	2,669	-5.7
수 입	1,867	2.6	1,964	5.2	2,119	7.9	1,902	10.0
무 역 수 지	1,083	51.2	1,011	-6.6	1,260	24.6	767	-

자료: KOTIS

<표 V-2>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05. 10월)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총계	2,668,726	-5.7		총계	1,902,011	10.0	
1	전자부품	991,395	-3.0	37.1	전자부품	979,576	-6.3	51.5
2	광물성연료	295,004	-20.2	11.1	산업용전자제품	288,394	66.8	15.2
3	산업용전자제품	266,877	-26.9	10.0	농산물	238,248	49.5	12.5
4	직물	177,004	24.4	6.6	비철금속제품	164,485	42.9	8.6
5	철강제품	158,728	9.6	5.9	중전기기	74,525	48.5	3.9
6	석유화학제품	130,625	-4.7	4.9	가정용전자제품	19,050	-34.6	1.0
7	비철금속제품	90,400	18.5	3.4	수산물	17,514	-26.3	0.9
8	수송기계	73,719	-4.8	2.8	철강제품	16,426	-10.8	0.9
9	가정용전자제품	54,079	-6.0	2.0	정밀화학제품	15,272	10.2	0.8
10	정밀화학제품	53,454	-5.4	2.0	기타기계류	9,688	1,533.3	0.5

자료 : KOTIS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대필리핀 투자규모 5억 4천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투자는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9~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02년 급감한 이후 신규 투자진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2005년 9월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해외투자잔액(순투자액)은 631건, 537.9백만 달러로 필리핀에 투자한 국가들 중에서 서열이 11위이며, 2004년에만 이뤄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8위에 해당됨.
-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총투자액(순투자기준)에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6.6백만 달러(순투자기준)로 66.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비스

업이 117.9백만 달러로 21.9%를 점함.

<표 V-3> 대필리핀 해외직접투자 현황 (2005년 9월)

단위: 건, 천 달러

신 고		총 투 자		회 수		순 투 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39	1,106,281	704	747,650	73	209,737	631	537,91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V-4> 대필리핀 주요 투자기업 현황

단위 : 천 달러

현지법인 명	업종	투자금액	투자잔액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INC.	전자, 통신장비 (MLCC, CHIP-R, M)	91,000	46,000
DAE RYUNG IND. INC(PHIL)	전자, 통신장비 (전자제품)	25,100	22,000
BEST CHEMICALS & PLASTIC INC.	화합물, 화학제	21,200	21,200
REPUBLIC TELECOMMUNICATIONS HOLDING INC.	통신업 (전기통신)	19,835	19,835
LG COLLINS ELECTRONICS MANILA INC.	가정용 전자제품 (세탁기)	19,144	19,144
POONGSAN MICROTEC PHILS INC.	전자, 통신장비 (리드프레임)	13,300	13,300
DAEWOO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건설업 (콘도 등)	23,234	11,617
MAXON SYSTEMS (PHILIPPINES) INC.	통신기기 (무선전화기)	10,000	10,000
DAE DUCK ELECTRONICS PHILIPPINE CO. INC.	전자, 통신장비 (인로기)	8,480	8,480
KOPRI INC.	건설업 (건설, 부동산임대)	8,211	8,211
BESTCHEM INC.	기타기계, 장비 (포장자제, 포장기)	8,000	8,000
SOUTHEAST ASIA CEMENT HOLDINGS INC.	기타 비금속 (시멘트)	18,265	7,759
PHILIPPINE SUNNY ELECTRONICS CORP.	전자, 통신장비 (전자부품, CRYST)	7,420	7,4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진출분야는 전자, 통신장비 등 제조업

- 현지투자진출의 주업종은 전자, 통신장비,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이며 CAVITE, BATAN 등 특별경제지대에 위치한 공단에 주로 입주
- 삼성전기(주)의 현지투자법인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INC.가 투자잔액 기준으로 규모가 제일 큰 46백만 달러이며 대필리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함. 그 다음으로 (주)라디스의 현지법인 DAE RYUNG IND. INC.가 투자규모(잔액기준) 22백만 달러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임.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2005년 10월말 현재 필리핀에 대한 수은의 여신지원액은 총 74.8백만 달러로, 대출이 전체의 85.2%인 63.8백만 달러, 보증이 14.8%인 11.0백만 달러를 기록함.

<표 V -5>

대필리핀 여신지원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 분	승인액	집행액	여신잔액
대 출	101,144	83,450	63,832
수 출 자 금	92,376	74,700	55,082
해 투 자 금	6,450	6,450	6,450
수 입 자 금	1,075	1,075	1,075
매 입 외 환	1,243	1,225	1,225
보 증	12,638	11,063	11,063
이 행 성 보 증	12,638	11,063	11,063
합 계	113,782	94,513	74,895



<표 V-6 >                    대필리핀 여신지원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천 달러

	프로젝트명	승인액	여신잔액
직 접 대 출	KEILCO앞 복합화력발전설비 수출	69,518	47,644
외국법인에 대한사업자금	(주)풍산 마이크로택의 현지법인앞 대출	6,000	6,000

## 2. 진출확대 방안

### 가. 수출 및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특별경제지대가 치안상태 및 인력확보에서 유리

- 마닐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집중되어 변두리지역은 제반 여건이 열악함. 따라서 정부 또는 민간이 개발한 수출공단, 산업공단과 같은 특별경제지대 등에 진출하는 것이 치안 및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해짐.
- 투자진출비용이 다소 적게 드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운영, 낮은 노동력 수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 태풍 등 자연재해 다발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 태풍 등 천재로 인한 수해 및 침수 다발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진출 대상지역의 공항, 항만, 도로, 통신, 전력, 용수 공급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대방의 부족한 신뢰성에 면밀한 대비 필요

- 구매계약서 또는 구두약속만 믿고 상거래를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L/C, T/T 등을 받고 본격 추진하는 것이

확실함. 또한 거래상담이 느리게 진행된다 해서 조급해지는 것은 금물.

#### □ 철저한 하자보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

- 기계류 등 설비장비를 취급하는 경우 철저한 하자보수 서비스(A/S)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일부 업체의 불성실한 A/S가 한국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

### 나.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 □ 투자우선계획(IPP)에 포함된 업종에 중점 진출

- IPP에 포함된 업종은 필리핀산 원자재의 활용도가 높고, 필리핀내에서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외화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업종 : 동광, 망간, 니켈, 크롬 등 금속광, 시멘트 원료, 유황, 석탄 등 광산물, 코코넛 등 농산물 가공업 등

#### □ ASEAN 시장진출에 유리한 산업

-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있고 ASEAN 국가들 사이에 교역 확대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산업 및 화학제품산업

#### □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단순노동산업 : 전자부품 조립, 섬유 등
- 고급인력산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개발, 데이터 입력, 만화영화산업 등

#### □ 필리핀의 쿼터 및 GSP 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선진국의 대필리핀 공여 GSP 혜택, 그리고 AFTA 추진에 따른 역내 특혜관세의 활용이 가능한 투자유망 분야 :

- 시멘트, 조선, 철강, 강판, 석유화학, 사료, 자동차부품, 농산물, 식품 가공, 섬유, 신발, 완구, 포장재 등

#### 다.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 □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한 다음 투자전략 추진

- 필리핀은 중산층이 미약하고 절대빈곤층이 전국민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낮은 관계로 대필리핀 외국인투자업체들은 주요 투자 목적으로 제3국 수출을 택함.
- 따라서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하고 장래 수출확대를 꾀하는 제반 투자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사전적 노력 필요

- 최근 3년 동안 필리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7.9%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10월에도 767백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앞으로 예기치 않은 수입규제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즉,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원부자재가 완제품으로 재생산, 제3국으로 수출되어 필리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책적 차원에서 미리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임.

##### □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의 구축과 정확한 정보 입수를 통한 효율적 대응과 우리의 주도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부록> 필리핀 외국인투자법

Republic Act No. 7042  
(As amended by RA 8179)

AN ACT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GISTERING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Philippines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Title.** - This Act shall be known as the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SEC. 2. **Declaration of Policy.** - It is the policy of the State to attract, promote and welcome productive investments from foreign individuals, partnerships,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in activities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 to national industrializ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to the extent that foreign investment is allowed in such activity by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Foreign investments shall be encouraged in enterprises that significantly expand livelihood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Filipinos; enhance economic value of farm products; promote the welfare of Filipino consumers; expand the scope, quality and volume of exports and their access to foreign markets; and/or transfer relevant technologies in agriculture, industry and support services. Foreign investments shall be welcome as a supplement to Filipino capital and technology in those enterprises serving mainly the domestic market.

As a general rule,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xtent of foreign ownership of export enterprises. In domestic market enterprises, foreigners can invest as much as one hundred percent (100%) equity except in areas included in the negative list. Foreign owned firms catering mainly to the domestic market shall be encouraged to undertake measures that will gradually increase Filipino participation in their businesses by taking in Filipino partners, electing Filipinos to the board of directors, implementing transfer of technology to Filipinos, generating more employment for the economy and enhancing skills of Filipino workers.

SEC. 3.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Act:

a) the term “Philippine National” shall mean a citizen of the Philippines or a domestic partnership or association wholly owne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a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of which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capital stock outstanding and entitled to vote is owned and hel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a corporation organized abroad and registered a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 under the Corporation Code of which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capital stock outstanding and entitled to vote is wholly owned by Filipinos or a trustee of funds for pension or other employee retirement or separation benefits, where the trustee is a Philippine national and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fund will accrue to the benefit of Philippine nationals: Provided, That where a corporation and its non-Filipino stockholders own stocks in a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gistered enterprise,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capital stock outstanding and entitled to vote of each of both corporations must be owned and hel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nd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each of both corporations must be citizens of the Philippines, in order that the corporation shall be considered a Philippine national; (as amended by R.A. 8179).

b) the term “investment” shall mean equity participation in any enterprise organized or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c) the term “foreign investment” shall mean an equity investment made by a non-Philippine national in the form of foreign exchange and/or other assets actually transferred to the Philippines and duly registered with the Central Bank which shall assess and appraise the value of such assets other than foreign exchange;

d) the phrase “doing business” shall include soliciting orders, service contracts, opening offices, whether called “liaison” offices or branches; appointing representatives or distributors domiciled in the Philippines or who in any calendar year stay 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one hundred eighty (180) days or more;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supervision or control of any domestic business, firm, entity or corporation in the Philippines; and any other act or acts that imply a continuity of commercial dealings or arrangements, and contemplate to that extent the performance of acts or works, or the exercise of some of the functions normally incident to, and in progressive prosecution of, commercial gain or of the purpose and object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phrase “doing business”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mere investment as a shareholder by a foreign entity in domestic corporations duly registered to do business, and/or the exercise of rights as such investor; nor having a nominee director or officer to represent its interests in such corporation; nor appointing a representative or distributor domiciled in the

Philippines which transacts business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e) the term “export enterprise” shall mean an enterprise wherein a manufacturer, processor or service (including tourism) enterprise exports sixty percent (60%) or more of its output, or wherein a trader purchases products domestically and exports sixty percent (60%) or more of such purchases;

f) the term “domestic market enterprise” shall mean an enterprise which produces goods for sale, or renders services to the domestic market entirely or if exporting a portion of its output fails to consistently export at least sixty percent (60%) thereof;

and

g) the term “Foreign Investments Negative List” or “Negative List” shall mean a list of areas of economic activity whose foreign ownership is limited to a maximum of forty percent (40%) of the equity capital of the enterprises engaged therein.

SEC. 4. **Scope.** – This Act shall not apply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governed and regulated by the General Banking Act and other law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entral Bank.

SEC. 5. **Registration of Investments of Non-Philippine Nationals.** – Without need of prior approval, a non-Philippine national,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3 a), and not otherwise disqualified by law may, upon registration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r with the 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TRCP)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in the case of single proprietorships, do business as defined in Section 3 d) of this Act or invest in a domestic enterprise up to one hundred percent (100%) of its capital, unless participation of non-Philippine nationals in the enterprise is prohibited or limited to a smaller percentage by existing law and/o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SEC or BTRCP, as the case may be, shall not impose any limitations on the extent of foreign ownership in an enterprise additional to those provided in this Act: Provided, however, That any enterprise seeking to avail of incentives under the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must apply for registration with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which shall process suc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evaluation prescribed in said Code: Provided, finally, That a non-Philippine national intending to engage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as an existing joint venture, in which he or his majority shareholder is a substantial partner, must disclose the fact and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ners in the existing joint venture in hi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SEC. During the transitory period as provided in Section 15 hereof, SEC shall disallow

registration of the applying non-Philippine national if the existing joint venture enterprise, particularly the Filipino partners therein, can reasonably prove they are capable to make the investment needed for the domestic market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y the competing applicant. Upon effectivity of this Act, SEC shall effect registration of any enterprise applying under this Act within fifteen (15) days upon submission of completed requirements.

**SEC. 6. Foreign Investment in Export Enterprises.** - Foreign investment in export enterprises whose products and services do not fall within Lists A and B of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provided under Section 8 hereof is allowed up to one hundred percent (100%) ownership.

Export enterprises which are non-Philippine nationals shall register with BOI and submit the reports that may be required to ensure continuing compliance of the export enterprise with its export requirement. BOI shall advise SEC or BTRCP, as the case may be, of any export enterprise that fails to meet the export ratio requirement. The SEC or BTRCP shall thereupon order the non-complying export enterprise to reduce its sales to the domestic market to not more than forty percent (40%) of its total production; failure to comply with such SEC or BTRCP order, without justifiable reason, shall subject the enterprise to cancellation of SEC or BTRCP registration, and/or the penalties provided in Section 14 hereof.

**SEC. 7. Foreign Investment in Domestic Market Enterprises.** - Non-Philippine nationals may own up to one hundred percent (100%) of domestic market enterprises unless foreign ownership therein is prohibited or limited by the Constitution existing law or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under Section 8 hereof. (As amended by R.A. 8179)

**SEC. 8. List of Investment Area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hall have two (2) components lists; A, and B.

a) List A shall enumerate the areas of activitie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by mandate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b) List B shall contain the areas of activities and enterprises regulated pursuant to law:

1) which are defense-related activities, requiring prior clearance and authorization from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to engage in such activity, such as the manufacture, repair, storage and/or distribution of firearms, ammunition, lethal

weapons, military ordinance, explosives, pyrotechnics and similar materials; unless such manufacturing or repair activity is specifically authorized, with a substantial export component, to a non-Philippine national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or

2) which have implications on public health and morals, such as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all forms of gambling; nightclubs, bars, beerhouses, dance halls; sauna and steam bathhouses and massage clinics.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market enterprises, with paid-in equity capital less than the equivalent two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200,000) are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Provided that if: (1) they involve advanced technology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2) they employ at least fifty (50) direct employees, then a minimum paid-in capital of 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100,000.00) shall be allowed to non-Philippine nationals.

Amendments to List B may be made upon recommendation of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or the Secretary of Health, 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endorsed by the NEDA, approved by the President, and promulgated by a Presidential Proclamation.

“Transitory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established in Sec. 15 hereof shall be replaced at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by the first Regular Negative List to be formulated and recommended by NEDA, following the process and criteria provided in Sections 8 of this Act. The first Regular Negative List shall be published not later than sixty (60) days before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provided in said section, and shall become immediately effective at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Subsequent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s shall become effective fifteen (15) days after publication in a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Philippines: Provided, however, That each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hall be prospective in operation and shall in no way affect foreign investment existing on the date of its publication.

“Amendments to List B after promulgation and publication of the first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at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shall not be made more often than once every two (2) years”. (As amended by R.A. 8179)

**SEC. 9. Investment Rights of Former Natural-born Filipinos.** - For the purpose of this Act, former natural born citizens of the Philippines shall have the same investment rights of a Philippine citizen in Cooperatives under Republic Act No. 6938, Rural Banks under Republic Act No. 7353, Thrift Banks and Private



Development Banks under Republic Act No. 7906, and Financing Companies under Republic Act No. 5980. These rights shall not extend to activities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including (1) the exercise of profession; (2) in defense related activities under Section 8 (b) hereof.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and, (3) activities covered by Republic Act No. 1180 (Retail Trade Act). Republic Act No. 5187 (Security Agency Act), Republic Act No. 7076 (Small Scale Mining Act), Republic Act No. 3018. As amended (Rice and Corn Industry Act). And P.D. 449 (Cockpits Operation and Management)". (As amended by R.A. 8179)

**SEC. 10. Other Rights of Natural Born Citize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Section 8 of the Constitution.** - Any natural born citizen who has lost his Philippine citizenship and who has the legal capacity to enter into a contract under Philippine laws may be a transferee of a private land up to a maximum area of five thousand (5,000) square meters in the case of urban land or three (3) hectares in the case of rural land to be used by him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In the case of married couples, one of them may avail of the privilege herein granted: Provided, That if both shall avail of the same, the total area acquired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herein fixed.

In the case the transferee already owns urban or rural land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he shall still be entitled to be a transferee of additional urban or rural land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which when added to those already owned by him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areas herein authorized.

A transferee under this Act may acquire not more than two (2) lots which should be situated in different municipalities or cities anywhere in the Philippines: Provided, That the total land area thereof shall not exceed five thousand (5,000) square meters in the case of urban land or three (3) hectares in the case of rural land for use by him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A transferee who has already acquired urban land shall be disqualified from acquiring rural land and vice versa". (As amended by R.A. 8179)

**SEC. 11.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 All industrial enterprises regardless of nationality of ownership shall comply with existing rules and regulations to protect and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meet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SEC. 12. Consistent Government Action.** - No agency, instrumentality or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Government shall take any action in conflict with or which will nullify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certificate or authority granted hereunder.

SEC. 1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 NEDA, in consultation with BOI, SEC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shall issue the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Act within one hundred and twenty (120) days after its effectivity. A copy of such rules and regulations shall be furnished the Congres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EC. 14. **Administrative Sanctions.** - A person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registration or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ssued pursuant thereto, or aids or abets in any manner any violation shall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pesos (P100,000).

If the offense is committed by a juridical entity, it shall be subject to a fine in an amount not exceeding  $\frac{1}{2}$  of 1% of total paid-in capital but not more than five million pesos (P5,000,000).

The president and/or officials responsible thereof shall also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two hundred thousand pesos (P200,000.00)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any person, firm or juridical entity involved shall be subject to forfeiture of all benefits granted under this Act.

SEC shall have the power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s provided herein for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SEC. 15. **Transitory Provisions.** - Prior to effectivity of th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the provisions of Book II of Executive Order 226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shall remain in force.

During the initial transitory period of thirty-six (36) months after issuanc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Act, the Transitory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A. List A:

1. All areas of investment in which foreign ownership is limited by mandate of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B. List B:

1. Manufacture, repair, storage and/or distribution of firearms, ammunition, lethal

weapons, military ordnance, explosives, pyrotechnics and similar materials required by law to be licensed by and under the continuing regulation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unless such manufacturing or repair activity is specifically authorized, with substantial export component, to a non-Philippine national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2.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all forms of gambling; nightclubs, bars, beerhouses, dance halls; sauna and steam bathhouses, massage clinics and other like activities regulated by law because of risks they may pose to public health and morals;

3.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market enterprises with paid-in equity capital less than the equivalent of Two-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200,000.00),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Provided, That if: (1) they involve advanced technology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2) they employ at least fifty (50) direct employees, then a minimum paid-in capital of 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100,000.00) shall be allowed to non-Philippine nationals.

SEC. 16. **Repealing Clause.** - Articles forty-four (44) to fifty-six (56) of Book II of Executive Order No. 226 are hereby repealed.

All other laws or parts of law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e hereby repealed or modified accordingly.

SEC. 17. **Separability Clause.** - If any part or section of this Act is declared unconstitutional for any reason whatsoever, such declara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other parts or sections of this Act.

SEC. 18. **Effectivity.** - This Act take effect from fifteen (15) days after approval and publication in two (2) newspapers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Philippines.

Approved,

(SGD) JOSE DE VENECIA, J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GD) NEPTALI A. GONZALES  
President of the Senate

This Act, which is a consolidation of Senate Bill No. 1399 and House Bill No. 5029 was finally passed by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25, 1996.

CAMILO L. SABIO  
Secretary General  
House of Representatives

HEZEL P. GACUTAN  
Secretary of the Senate

Approved: March 28, 1996

(SGD) FIDEL V. RAMOS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부장대우겸 수석조사역 정 동 식  
(☎3779-6664)  
E-mail : kdchung@koreaexim.go.kr